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3

현안분석

-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생산성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이해와 분석
-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기획

2004 미국의 세제개편과 향후 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자산 부풀리기로 매년 290억달러 세수손실 외

정책흐름

재정경제부 2005 업무계획보고 외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I 편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 / 서희열
현안분석	6	정부부문 자본소득과 생산성 / 류덕현
	22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이해와 분석 / 박상원
	34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 정제호
기획	54	2004 미국의 세제개편과 향후 동향 / 장근호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72	미국, 자산부풀리기로 매년 290억달러 세수손실 외
정책흐름	82	재정경제부 2005 업무계획보고
	85	2월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
	87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계획
	92	국세청 업무현황보고 자료
재정통계	100	특별소비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04	1주택 양도세 실질적 면제 유지해야 외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

서희열 / 한국세무학회 회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세법률주의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

조세는 공권력 단체가 과세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기본 인권 중 하나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본래적으로 침해적이다. 이러한 재산 침해의 한계를 법률로 보호하는 원칙



이 조세법률주의이며 따라서 조세절차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기본권 준중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현행 조세법상 각 세목의 과세요건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가변성을 띠고 있다. 또한 조세법의 집행과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띠면서 아울러 조세법률 관계의 확정절차가 권력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세행정이 민주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할 소지는 다른 어떤 법 분야에서보다 현저하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는 매년 반복적·대량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절차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은 다른 행정심판제도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세심판소의 발족과 그 사명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62호로 제정·공포된 「국세심사청구권」에 의해 국세불복에 대한 재결절차가 특별행정불복제도로 출발한 이래 그 운용실태는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권리구제의 추구보다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을 두

든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국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975년 4월 1일에 현재 국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소가 발족되었다.

그러면 최고 행정심급을 맡고 있는 국세심판원의 조세불복에 대한 재결은 만족할 만한가. 필자의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국세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중 평균 28.9%가 사법심의 판결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세심판원이 행정심급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인 장·단기 개편방안

국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 최고 행정심급의 사명을 다하려면 다음과 같이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인용률 제고와 제도개혁에 의한 납세자 권리의 신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세행정의 과학화와 민주화 그리고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 불복청구를 재결하는 행정심급이 준사법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심급에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는 사건이 사법심을 거쳐야 구제된다는 것은 결국 납세자로 하여금 권익침해 상태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그들에

게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 사법심의 비싼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량을 고려하여 국세심판관과 조사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세심판원은 2004년 3월 제2차 정립조정 후 국세심판관 1인당 업무량이 연간 862건, 하루에 3.1건을 처리해야 하며, 1건당 불과 2.6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관의 경우에는 연간 345건에 하루에 1.3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국세심판청구의 발생건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업무량의 과중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량의 과중상태하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인재로 국세심판관의 자리를 메운다고 하더라도 질 높은 재결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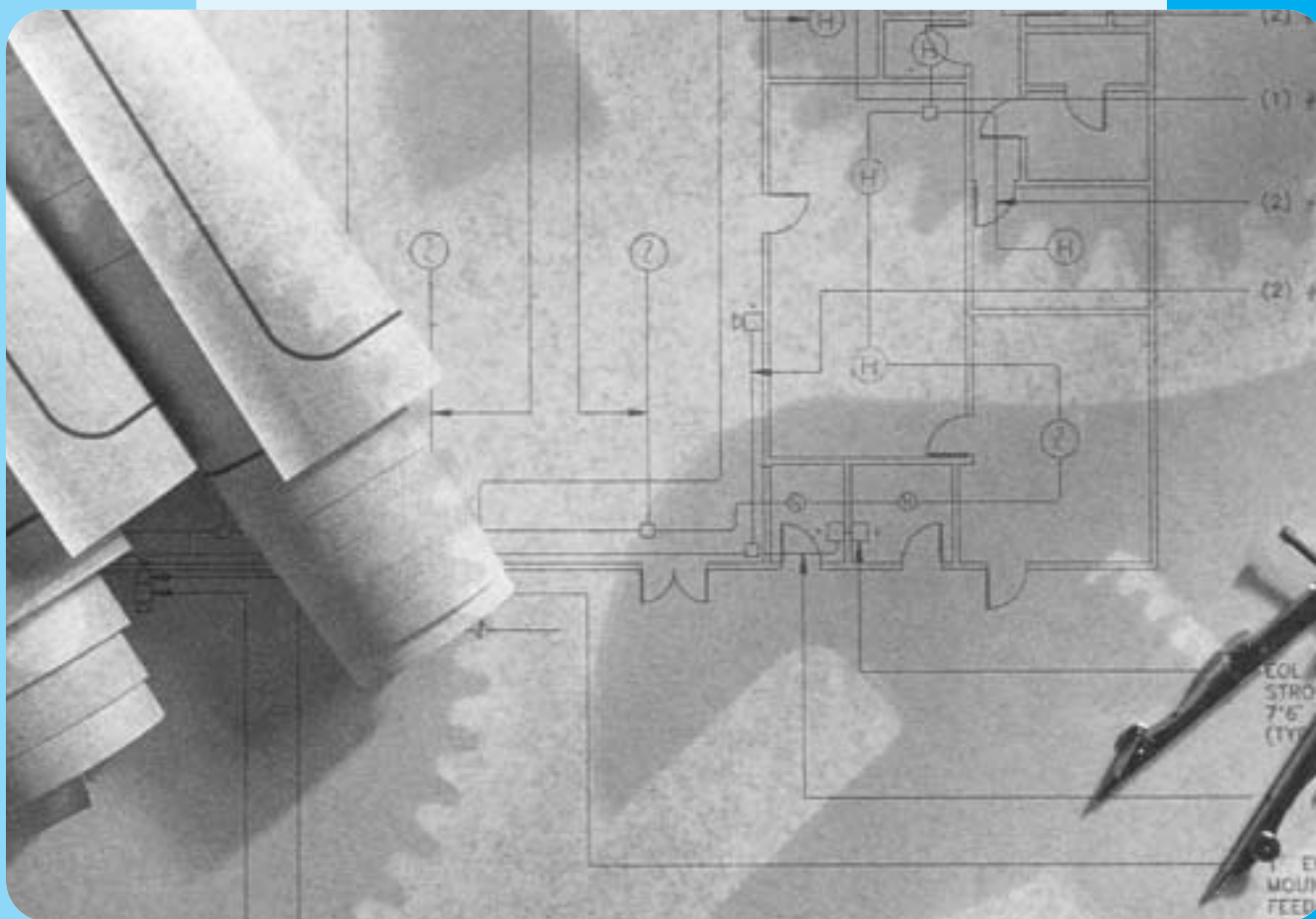
셋째, 국세심판관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심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세심판관 신분의 엄격한 독립성 보장이며, 결국 판단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판단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것이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판청구 절차를 준사법 절차화하면서 재결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심판관의 신분이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보장되고 심판업무를 천직으로 아는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임국세심판관의 임기 3년은 너무나 짧다. 따라서 최소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세심판관직이 일반 행정직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세심판관은 심판업무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성의 소유자가 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심판관은 스스로 장기근속을 원하면서 심판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계속하여 축적할 수 있다. 사실 상명하복에 익숙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비록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찾고 판단하는 심판업무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세심판관직을 평가하면 현재와 같이 집행기관인 재정경제부나 국세청 또는 그 산하기관과 국세심판원 심판관직의 상호간의 교류방법으로 교류 또는 보직되는 현행의 인사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세심판원 지방지원을 최소한 부산·대구·광주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심판청구시 서울에 소재하는 국세심판원에까지 반드시 와야만 한다. 사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 소재하는 납세자에게 있어서 이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다. 미국의 조세법원이 판사로 하여금 순회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배려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세심판원의 지방지원 설치 문제는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인력자원의 충원은 국세심판청구의 발생건수를 참고로 하여 지방지원에 배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지원에는 심판관을 1~2명(이 중 한명을 지방지원 원장으로 보직한다)을 두고 그 밑에 조사관을 두어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여섯째, 현행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와 지방세 2차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청구로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통합 개편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스럽다. 왜냐하면 양자의 인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한 점이 사실이므로 재정경제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지방세 심사과)를 통합하여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심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와의 지위상 형평성과도 부합하는 대안이다. 



EOL
STRO
7'5"
(TY

E
MOUN
FEED

현안분석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생산성

류 덕 현 /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이해와 분석

박 상 원 /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정 재 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생산성



류 덕 현 초청연구위원 (dhryu@kipf.re.kr)

I. 서론

생산성 향상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늘 첫 번째 고려대상이 되어 왔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추진해 왔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DB 및 소프트웨어의 질적 업그레이드,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¹⁾.

하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요소를 투입할 것인지 또 어떤 부문에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많은 논란과 의문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재정지출과 연관지어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면 그 논란의 폭과 심도는 더욱 커진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여러 경제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을 경제성장의 동력(an engine of economic growth)으로 삼으려고 하는 과제 역시 현 참여정부의 정책적 고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본고는 공공재의 생산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부문의 자본스톡(public capital stock)과 생산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정경제부(2004), 「종합투자계획 관련 문답자료」 참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정부투자지출은 총고정 자본 형성의 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정부투자지출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보정하는 공공재 생산에 투자되는데 이로써 민간부문 생산에 대한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창출하기도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정부투자지출은 총고정자본 형성의 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정부투자지출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보정하는 공공재 생산에 투자되는데 이로써 민간부문 생산에 대한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창출하기도 한다. 즉 민간부문이 생산하지 못하는 도로, 철도, 항만, 교육, 국방 등의 공공재는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요소인 이른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KDI(2002)에 의한 한국경제의 1963~2000년까지의 성장요인에 대한 분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선 1963~2000년 기간중 비주택기업 부문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8.80%로서 1960년대의 11.97%에서 점차 둔화되어 1990년대에는 6.20%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중 국민소득 증가율 8.8%는 총요소투입에 의해서 3.98%p (45.2%), 총요소생산성에 의해서는 4.82%p(54.8%)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의 기여도가 요소투입 증가의 기여도를 다소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³⁾.

<표 1> 비주택 기업부문의 성장요인분석

	1963~1970	1970~1979	1979~1990	1990~2000	1963~2000
국민소득(성장률, %)	11.97	10.30	7.98	6.20	8.80
총요소투입(기여도, %p)	3.22	5.00	4.62	2.87	3.98
노동투입	2.55	3.17	2.31	1.41	1.76
자본투입	0.67	1.83	2.32	1.47	1.53
총요소생산성(기여도, %p)	8.75	5.30	3.35	3.33	4.82

자료: 김동석 외 (2002), p.129, <표 8-2>에서 재인용.

2) 정부의 재정지출 중 자본스톡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투자성 지출이므로 본 논의의 재정지출은 정부투자지출로 한정하기로 한다.

3) 이 중 기술진보에 의한 국민소득 성장 효과는 2.28%p(기간 전체 성장의 25.88%)로 Krugman이 지적한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기술진보 등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소투입의 증가(특히 해외차입에 의한 자본투입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만약, 위의 분석을 정부부문까지 포함하여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면 정부부문의 자본투입은 직접적으로는 중요소투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중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경제성장의 경험에서 정부부문의 자본투입이 민간부문의 중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economic growth theory)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문헌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인적자본, 지식 과급효과 및 사회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등을 변수화하여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문헌들이 아주 활발하였다(Romer(1986), Becker et. al (1998), etc).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와 경제성장을 연관시키는 문헌들도 다수 존재한다(Slemrod (1995)). 한편, 정부의 사회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Aschauer(1989)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미국 경제의 1980년대 생산성 하락을 공공부문 자본스톡의 감소로 설명하였으며 비국방(non-military) 정부부문 자본스톡(stock)이 비국방 정부부문 재정지출(flow)보다 생산성 하락을 보다 잘 설명함을 보였다. 또한 고속도로, 공항, 대중교통수단 및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과 같은 핵심(core) 인프라가 생산성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간 횡단면 연구(cross-country analysis)를 통해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 중 21개 개도국의 경우를 분석한 Baffes and Shar(1998)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간단한 생산함수모형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되는 여러 변수들을 모형 속에 포함시켜 국가간 횡단면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가 큰 변수들을 파악하였으며 1965~84년 동안 인적자본을 개발시키는 정부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한편 문춘걸·현진권(2004)에서는 정부부문 투입이 민간부문 중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부문의 생산성으로 정의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계측하였다. 즉 민간부문의 중요소생산성을 기존의 생산함수 혹은 비용함수접근법에 의해 구하지 않고 산출의 변화율에서 총투입의 변화율을 차감하여 구한 값을 지수변환하여 계산하였다⁴⁾. 또한 정부부문의 투입요소로 국가공무원 수의 변화율과 인건비를 제외한 정부지출의 변화율 등을 민간부문의 중요소생산성지수에 회귀분석한 후 그 효과를 정부부문의 생산성으로

4) 이들이 구한 민간부문의 중요소생산성은 규모의 경제효과와 기술진보 두 가지만으로 구성되는 반면 KDI는 이 둘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중요소생산성을 분해하고 있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생산함수접근법을 통해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외부성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계측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생산함수접근법을 통해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외부성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분석모형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은 경제성장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산함수접근법(production function approach)이다. 이 모형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경제성장이 크게 자본투입과 노동투입 두 요소에 의해서만 설명된다고 설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자본스톡 부문을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두 부문으로 나누고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식에 설명변수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을 확장하여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자본재 형태별로 구분하고 민간부문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이는 정부 재정지출의 구성요소의 변화가 주는 효과분석에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총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Y_t = A_t \cdot f(N_t, K_t, G_t)$$

단, Y_t 는 민간부문 총산출, N_t 는 민간부문 노동투입, K_t 는 민간부문 자본스톡, G_t 는 정부부문 자본스톡, 그리고 A_t 는 생산성 혹은 Hicks중립적인 기술진보를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함수형태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위의 변수들을 로그변환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y_t = a_t + e_N \cdot n_t + e_K \cdot k_t + e_G \cdot g_t$$

단, 소문자는 위의 로그변환 값들이고 e_i 는 각 투입요소들의 산출탄력성 (output elasticity) 을 나타낸다.

우리는 여기서 생산함수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혹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에 따라 모형을 달리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모형을 고려한다.

1. 모형 I

먼저, 생산함수가 민간투입요소 N, K 에 대해선 CRS를 보이지만 정부자본 투입 G 까지 포함할 경우 IRS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또한 요소시장과 산출물시장은 완전경쟁시장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에 대한 분배율은 각 생산요소에 대한 산출탄력성과 일치하게 되며 생산성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y_t - k_t = a_t + e_N \cdot (n_t - k_t) + e_G \cdot g_t$$

$$p_t = y_t - s_N \cdot n_t - s_K \cdot k_t = a_t + e_G \cdot g_t$$

위의 첫 번째 식은 자본 1단위당 산출물이 (민간) 노동-자본 비율과 정부 자본스톡의 식으로 표현되어 기존의 생산함수접근법을 수정하여 정부부문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식 역시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설명변수로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모형 II

이제 경제에 혼잡효과 (congestion effect)를 고려하여 생산함수가 모든 생산요소인 N, K, G 에 대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보인다고 가정한다. 또한 민간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한계생산성인 산출탄력성의 일정한 비율만큼 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⁵⁾.

$$s_j = \theta \cdot e_j \text{ for } j = N, K$$

5) 이전 모형 I에서는 $s_i = e_i$ 이다

생산함수가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므로 회귀분석에서는 모형 II를 기본모형으로 해서 추정한다.

단, s_j 는 j 투입요소의 분배율이다. 그리고 적절한 대수(algebra)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생산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y_t - k_t = a_t + e_N \cdot (n_t - k_t) + e_G \cdot (g_t - k_t)$$

$$p_t = a_t + e_G \cdot (g_t - i_t)$$

단, $i_t = s_N \cdot n_t + s_K \cdot k_t$ 로 노동과 자본의 복합투입요소로 정의된다. 생산함수가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므로 회귀분석에서는 위의 모형 II를 기본모형으로 해서 추정한다.

III. 자료 및 실증연구

1. 자료

위에서 구한 모형을 따라 회귀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산출, 자본, 노동,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실제 자료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사용되었거나 추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선, 한국의 자본스톡을 추계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준영(2000), 김동석(KDI) 외(2002) 그리고 표학길(2003) 등이 있다. 김동석 외(2002)는 1963~2000년까지 Denison의 성장회계접근방식을 통해 비주택기업 부문의 자본스톡과 노동투입을 구한 후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한다⁶⁾. 표학길(2003)은 1953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자본스톡을 산업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김준영(2000)은 1968~89년까지 경제활동별로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있다.

6) 이렇게 구한 총요소생산성은 다시 20개의 요인으로 분해된다.

한편,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에 대한 추계도 이루어지고 있다⁷⁾. 우선, 김준영(1996)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으로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을 추정하고 있으며 현진권·권호영(2002)은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polynomial benchmark year method)을 사용하여 1968~1999년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방교육기관 등을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자본을 추계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재 형태별(건물, 기계, 구축물 및 차량)로 나누어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있다⁸⁾.

본 연구의 회귀방정식에 사용된 변수들의 대부분은 김동석 외(2002)와 현진권·권호영(2002)에서 연구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의해서만 부가가치가 생산된다고 하는 가정을 도입하여 국민소득(Y)을 비주택기업 부문 국민소득으로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세 부문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노동부문: 정부서비스 생산자, 사회/개인서비스업, 비영리 서비스 생산
- 자본부문: 주택소유 부문의 국민소득
- 해외부문: 국외 순수취 노동소득과 국외 순수취 재산소득

총요소생산성(P)은 김동석 외(2002)에서 구한 비주택기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고 노동투입(N)은 비주택기업 부문 취업자 수, 주당 평균취업시간, 성별/연령별 구성변화, 교육수준, 노동의 능률변화 등을 반영한 총노동투입을 사용하며 자본스톡(K)은 비주택기업부문의 불변가격 순자본스톡을 사용한다. 정부부문 자본스톡(G)은 현진권·권호영(2002)의 일반정부 순자본스톡⁹⁾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자본재 형태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를 건물, 기계, 구축물 및 차량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¹⁰⁾. [그림1]은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자본재 형태별로 분류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

7)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도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로는 현진권·권호영(2002)을 참조할 수 있다.

8) 영구재고법은 해당 자산에 대한 폐기분포와 경제적 내용연수와 같은 기초자료가 확립된 상태에서 유용한 자본스톡 추정방법이다. 반면에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은 두 기준연도 자본스톡 자료에 투자 시계열자료를 접속하여 기준연도 사이에 있는 각 연도의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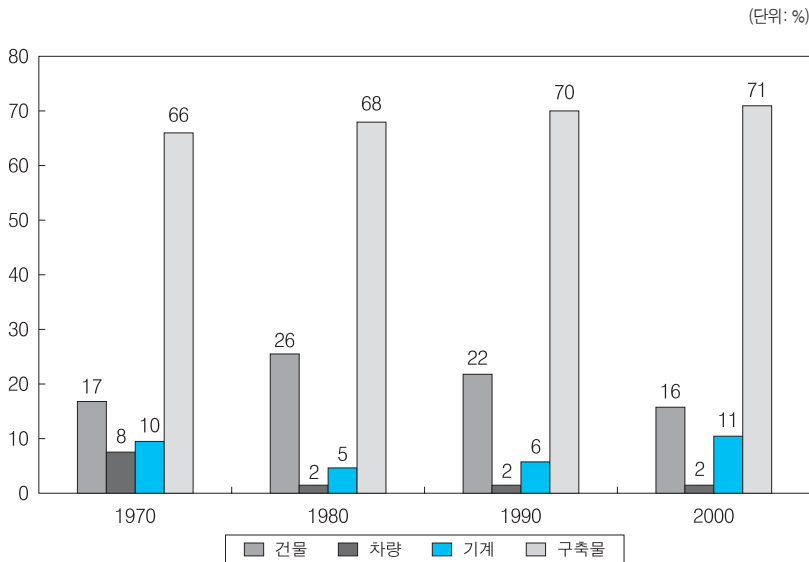
9) 이들의 경우 시계열이 1968년부터 1999년까지밖에 없어 고려하고 있는 표본기간인 2000년의 경우가 제외되므로 2000년도의 경우 1999년의 증가율을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10)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은 표학길(2003)의 산업별 자본스톡 추계로부터 비주택기업 부문에 해당하는 산업들의 자본스톡을 전 산업 자본스톡의 합으로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나 회귀분석 결과 추정된 계수값이 이론적인 예측치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고에는 생략한다.

[그림 1]은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자본재 형태별로 분류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축물과 건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자본재 형태별 분류 중 건축물과 건물을 합한 것을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합치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축물과 건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자본재 형태별 분류 중 건축물과 건물을 합한 것을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와 합치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제조업가동률지수(CU)는 물적 투입요소의 경기순환에 대한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통계청의 제조업가동률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자본재 형태별 구성비율



자료: 현진권·권호영(2002).

2.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에는 앞서 기술된 모형에서 생산함수가 모든 투입요소에 대해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을 보인다고 가정한 모형Ⅱ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이 실제 모형 추정에 사용되었다.

$$y_t - k_t = a_0 + a_1 \times t + a_2 \times (n_t - k_t) + a_3 \times (g_t - k_t) + a_4 \times cu_t + u_t$$

$$p_t = b_0 + b_1 \times t + b_2 \times (g_t - i_t) + b_3 \times cu_t + e_t$$

단, t 는 시간추세변수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앞서 기술한 것과 동일한 변수들이다. 우선 <표 2>의 정부부문 순자본스톡과 생산성에 대한 회귀방정식 분석결과를 보자. 각 행은 독립된 회귀방정식 결과이고 그 옆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이다. 첫 번째 패널은 종속 변수를 소득으로 한 것이고 둘째 패널은 중요소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것이다. 회귀방정식 대부분의 Durbin-Watson 통계량이 2 이하여서 잔차항의 자기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이를 교정(error correction)하여 비선형자승오차(nonlinear least squares: NLS) 방식을 통해서 추정하였다.

먼저, (식 1.1)의 경우 자본 1단위당 산출(y)에 대하여 (민간부문) 노동-자본 투입비율($n-k$)과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민간 자본스톡의 비율($g-k$)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어 위에서 설정한 모형설정(model specification)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g-k$ 의 추정계수의 t -값이 작아 1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k$ 의 추정계수 0.245는 $n-k$ 의 추정계수인 0.5575에 비해서도 적절한 크기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인 Aschauer(1989)의 경우 $g-k$ 의 추정계수 0.39가 $n-k$ 의 추정계수 0.36에 비해 너무 커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Glomm and Ravikumar(1997) 참조). (식 1.2)는 민간투입요소들과 정부부문 자본투입요소들을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식 1.1)과 (식 1.2)를 통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가정(CRS)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F -통계량을 계산하면 $F(1, 27) = 0.6279$ 로 나와 귀무가정을 기각할 수 없음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모형Ⅱ의 scaling parameter인 θ 를 직접 추계할 수도 있는데 추계한 θ 는 1.3247으로써 이는 민간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대한 산출탄력성보다 약 32% 더 분배받는다라는 뜻이며 또한 이렇게 해서 구한 산출탄력성의 값 $s_N = 0.7386$, $s_K = 0.2614$ 는 (식 1.1)의 추정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여 모형의 추정값들

(식 1.7)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에 따라 모형에서 도출하여 구한 식으로 추정된 것이며 (g-i)가 1% 변할 때 총요소생산성이 0.269%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외부성 효과가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 정부부문의 순자본스톡과 생산성: 연간자료, 1968~2000

(A) 자본 1 단위당 산출 (y-k)									
	c	t	n-k	g-k	g	k	cu	ρ	\bar{R}^2
(식 1.1)	-2.9851*** (-6.4823)	-0.0084 (-0.8215)	0.5575*** (3.6109)	0.2450 (1.5111)	-	-	0.6274*** (5.6484)	0.7039*** (4.8813)	0.9667
(식 1.2)	-2.2759** (-2.0751)	0.0228 (1.0518)	0.4428 (1.8591)	-	0.1638 (0.7918)	-0.3843 (-1.5098)	0.6388*** (5.5506)	0.7189*** (4.5966)	0.9660
(식 1.3)	-1.8870 (-1.9859)	0.0332 (1.9554)	0.3761 (1.8334)	-	-	-0.3539 (-1.4115)	0.6498*** (5.9124)	0.7541*** (5.9052)	0.9665

(B) 총요소생산성 (p)										
	c	t	g	k	n	i	g-i	cu	ρ	\bar{R}^2
(식 1.4)	0.7255 (1.0964)	0.0055 (0.3440)	0.2294 (1.5440)	-	-	-	-	0.6051*** (5.9643)	0.6568*** (5.1411)	0.9934
(식 1.5)	1.6552 (1.5884)	0.0174 (0.8300)	0.1402 (0.7162)	0.0685 (0.3173)	-0.2823 (-1.2557)	-	-	0.6602*** (5.8000)	0.7130*** (4.9753)	0.9935
(식 1.6)	1.9991** (2.1418)	0.0290 (1.4356)	0.1966 (1.3363)	-	-	-0.4156 (-1.8811)	-	0.6845*** (6.4956)	0.6794*** (4.9090)	0.9940
(식 1.7)	1.3477*** (3.1530)	0.0142** (2.0406)	-	-	-	-	0.2690** (2.3717)	0.6637*** (6.5972)	0.6679*** (5.1482)	0.9942

주: () 속의 값은 t-값이며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이 일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위에서 구한 노동분배율에 대한 추정치(s_N) 0.7386은 1968~2000년의 표본 평균과 one standard error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추정이 현실적인 값들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 1.4)~(식 1.7)들은 총요소생산성(y)과 정부부문 자본스톡(g, g-i)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식 1.4)는 다른 설명변수를 제외하고 정부부문의 자본스톡과 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만의 관계를 보여주는 회귀방정식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예측한 대로 적절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낮은 t-값을 보임으로써 통계적인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식 1.5)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정부부문의 자본스톡 모두를 포함시켰지만 대다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식 1.7)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에 따라 모형에서 도출하여 구한 식으로 추정된 것이며 (g-i)가 1% 변할 때 총

〈표 3〉 정부부문의 순자본스톡과 생산성: 자본재 형태별

(A) 자본 1 단위당 산출 (y-k)												
	c	t	n-k	g_bdg-k	g_eqp-k	g_str-k	g_veh-k	g1-k	g2-k	cu	ρ	\bar{R}^2
(식 2.1)	-3.3878*** (-6.2252)	0.0156 (1.1545)	0.4693** (2.4416)	0.7554 (1.6247)	0.0783 (0.7955)	0.2043 (1.4519)	-0.8914 (-1.2957)	-	-	0.6816*** (5.8760)	0.6687*** (3.8186)	0.9665
(식 2.2)	-2.9602*** (-6.3512)	0.0056 (0.5480)	0.4181** (2.5712)	0.3062 (1.5624)	-	-	-	-	-	0.6361*** (6.1846)	0.8472*** (7.8531)	0.9661
(식 2.3)	-3.1542*** (-6.7029)	0.0176 (1.6590)	0.6483*** (3.8876)	-	0.0405 (0.99530)	-	-	-	-	0.6289*** (5.5336)	0.6975*** (4.9468)	0.9650
(식 2.4)	-3.1409*** (-6.8358)	0.0147 (1.3799)	0.6423*** (3.8009)	-	-	0.0635 (1.5512)	-	-	-	0.6338*** (5.7151)	0.6953*** (5.7151)	0.9666
(식 2.5)	-2.9615*** (-6.3750)	0.0075 (0.7143)	0.5546*** (3.5841)	-	-	-	0.2493 (1.4648)	-	-	0.6263*** (5.6209)	0.7044*** (4.9090)	0.9664
(식 2.6)	-3.3878*** (-6.2252)	0.0156 (1.1545)	0.4693** (2.4416)	-	-	-	-0.8914 (-1.2957)	-	-	0.6498*** (5.9124)	0.7541*** (5.9052)	0.9665
(식 2.7)	-3.0176*** (-6.0535)	0.0094 (0.6968)	0.5724** (2.9164)	-	-	-	-	0.2059 (0.7502)	0.0293 (0.5311)	0.6298*** (5.5729)	0.6921*** (4.5525)	0.9656
(식 2.8)	-2.9272*** (-6.2749)	0.0049 (0.4769)	0.5051*** (3.3605)	-	-	-	-	0.2957 (1.4708)	-	0.6296*** (5.7111)	0.7161*** (4.9424)	0.9666
(식 2.9)	-3.1528*** (-6.8151)	0.0164 (1.5294)	0.6555*** (3.8663)	-	-	-	-	-	0.0576 (1.4241)	0.6310*** (5.6401)	0.6926*** (4.9199)	0.9662

(B) 총요소생산성 (p)												
	c	t	g_bdg-i	g_eqp-i	g_str-i	g_veh-i	g1-i	g2-i	cu	ρ	\bar{R}^2	
(식 2.10)	1.0406** (2.2149)	0.0246* (1.9366)	0.4773 (1.5133)	0.4773 (1.5133)	0.0799 (0.9054)	-0.4753 (-1.0479)	-	-	0.6862*** (6.3678)	0.5389** (2.8722)	0.9939	
(식 2.11)	1.3082*** (2.7848)	0.0177* (1.9009)	0.3776 (2.1637)	-	-	-	-	-	0.6584*** (7.0090)	0.8653*** (9.2151)	0.9938	
(식 2.12)	1.2327*** (2.7038)	0.0279 (12.3190)	-	0.0527 (1.7387)	-	-	-	-	0.6362*** (6.2107)	0.6379*** (4.6986)	0.9938	
(식 2.13)	1.2272*** (2.7993)	0.0243 (2.7994)	-	-	0.0711 (2.37620)	-	-	-	0.6479*** (6.5386)	0.6226*** (4.9518)	0.9941	
(식 2.14)	1.3738*** (3.2145)	0.0129 (1.7162)	-	-	-	0.2763 (2.3273)	-	-	0.6630*** (6.5696)	0.6700*** (5.1676)	0.9941	
(식 2.15)	1.3137*** (2.9440)	0.0153 (1.3845)	-	-	-	-	0.2162 (0.9223)	0.0320 (0.6570)	0.6660*** (6.4527)	0.6556*** (4.8420)	0.9940	
(식 2.16)	1.4039*** (3.2981)	0.0105 (1.2624)	-	-	-	-	0.3395 (2.3811)	-	0.6670*** (6.5912)	0.6775*** (4.9668)	0.9941	
(식 2.17)	1.2234** (2.7672)	0.0254*** (8.9534)	-	-	-	-	-	0.0653 (2.1767)	0.6453*** (6.4692)	0.6309*** (4.9444)	0.9940	

주: () 속의 값은 t-값이며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정부부문 자본스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건축물과 건물의 합으로 정의한 $g1$ 이 포함된 (식 2.7)과 (식 2.8)은 계수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에서 자본재 형태별로 구분하기 전의 회귀식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건물’이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요소생산성이 0.269%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외부성 효과가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

〈표 3〉은 위의 분석을 연장하여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을 자본재 형태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한 것을 정리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을 자본재 형태별로 나누었을 때와 나누지 않았을 때 서로 비슷한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부문 자본스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건축물과 건물의 합으로 정의한 $g1$ 이 포함된 (식 2.7)과 (식 2.8)은 계수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에서 자본재 형태별로 구분하기 전의 회귀식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건물’이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총요소생산성의 회귀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식 2.16)과 (식 2.17)에서 $g1-i$ 와 $g2-i$ 의 계수값이 각각 0.3395와 0.0653으로 자본재 형태별로 구분하기 전의 계수값보다 약간씩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이 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4〉는 정부부문의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감률을 시기에 따라 구분한 표인데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의 추세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시간효과를 제어한 조정된 정부부문 자본스톡 변수와 시간추세, 민간투입요소, 그리고 가동률 효과 등을 제어한 조정된 총요소생산성 변수를 그린 [그림 2]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4〉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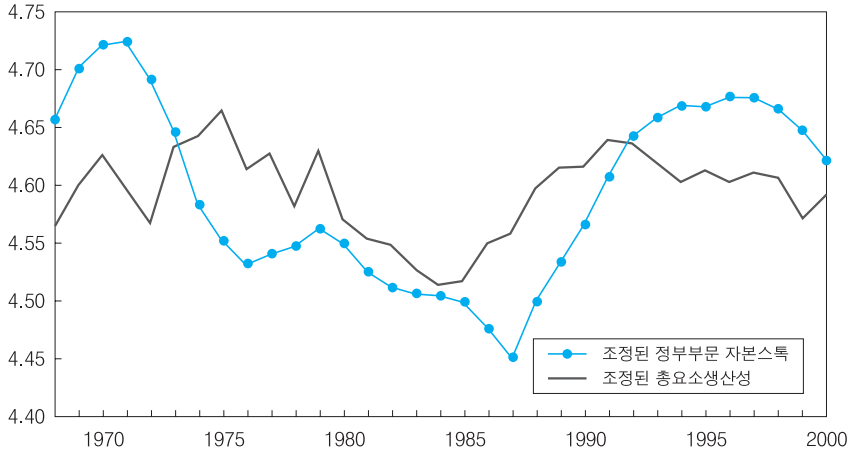
(단위: %)

	1968~1979	1980~1985	1986~1997	1998~2000	1968~2000
정부부문 자본스톡	-0.84	-1.05	1.47	-1.83	-0.11
총요소생산성	0.60	-1.87	0.79	-0.62	0.09

주: 정부부문 순자본스톡은 시간추세를 제거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은 시간추세, 민간투입요소, 그리고 제조업가동률 효과를 제어하였음.

1) 미국의 경우 이 변수의 추정계수는 0.39이다(Aschauer(1989) 참조).

[그림 2] 정부부문의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의 추이



IV.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물적 투입요소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총요소생산성과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석 외(2002)에서 구한 총요소생산성의 5개의 구성 요인¹²⁾에 추가적으로 정부부문의 민간생산에 대한 외부성 효과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자본재 형태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부문 자본스톡 중 건축물과 건물 등의 생산성 제고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부문 자본스톡 형성에 기여하는 정부 재정지출이 향후 어떤 식으로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상의 분석방법은 향후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에 있어 자원배분의 구성효과 분석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부부문은 자료의 한계상 일반정부 부문의 자본스톡만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공기업들

12) 김동석 외 (2002)에서는 Denison이 정의한 20개의 요소를 다시 5개로 묶어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원재배분, 규모의 경제, 환경오염 방지, 불규칙 요인(기후 등), 그리고 기술진보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이용하면 일반행정, 국방, 교육, 경제사업, 보건, 사회보호 등 기능별 정부지출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중장기 플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공공부문이다. 우리나라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공기업들(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자본스톡 추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 부문의 생산성 기여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자본스톡이 보다 정교하고 자세하게 추계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담고 있는데 향후 미시적 접근에 의한 정부부문의 생산성 외부효과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flow variables) 변수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의미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이용하면 우선 정부의 재정지출 중 경제성질별 재정지출(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 형성, 이전지출 등)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행정, 국방, 교육, 경제사업, 보건, 사회보호 등 기능별 정부지출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도 있다. 특히 기능별 재정지출의 생산성 효과분석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중장기 플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¹³⁾. 또한 이상의 분석틀을 연장하여 국가간 횡단면(cross-country)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OECD 국가들의 성장요인에 대한 분석 중 정부부문의 자본스톡이 어느 정도의 생산성 외부성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성장정체(stagnation of economic growth)에 빠져 있는 현재의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3) 『2004~200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개년 연평균 총지출증가율을 6.3%, 사회복지 분야 12.2%로 유지하는 데 반해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출증가율을 3.1%, 3.7%, 2.8%로 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5〉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단위: 10억원)

연도	비주택부문 국민소득	비주택부문 순자본소득	정부부문 순자본소득	비주택부문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1985=100)	제조업 기동률 (1985=100)
1968	21,253	94,752	9,422	52.0	45.9	64.3
1969	25,457	101,254	10,952	54.3	52.9	71.4
1970	28,097	106,067	12,404	53.3	58.2	73.4
1971	31,005	109,771	13,808	55.8	61.6	79.3
1972	33,543	112,631	14,850	57.9	64.5	83.6
1973	39,734	119,810	15,749	60.8	73.3	87.5
1974	43,605	126,812	16,432	66.5	74.7	87.0
1975	46,373	131,272	17,682	68.2	76.9	83.7
1976	52,058	141,148	19,231	73.2	81.5	94.2
1977	58,042	151,193	21,536	75.6	87.4	97.3
1978	63,639	165,300	24,066	81.2	89.9	105.2
1979	67,914	189,533	27,151	82.8	91.5	97.8
1980	63,783	203,991	29,757	85.6	81.8	87.7
1981	68,006	222,427	32,215	89.1	83.4	88.6
1982	72,180	240,417	35,305	92.5	84.7	87.7
1983	80,443	262,726	38,974	93.4	92.0	95.8
1984	88,647	283,747	43,202	94.8	98.4	101.7
1985	94,995	307,066	47,748	100.0	100.0	100.0
1986	107,761	334,583	51,757	100.4	110.9	104.2
1987	121,221	375,102	56,075	107.6	116.5	107.5
1988	135,114	409,799	65,351	113.8	122.2	105.8
1989	143,868	455,185	75,074	117.2	124.8	102.1
1990	157,971	503,185	86,108	121.8	130.7	104.6
1991	175,988	551,293	99,687	126.3	139.4	106.3
1992	185,371	609,821	114,692	129.6	141.6	104.7
1993	195,178	675,275	129,330	134.8	142.4	104.1
1994	212,454	730,572	145,075	139.0	149.2	108.7
1995	229,893	810,601	160,952	144.5	154.5	108.3
1996	242,607	888,019	180,160	148.0	157.7	107.9
1997	253,780	977,276	199,933	147.4	163.0	105.9
1998	231,724	1,069,084	219,962	139.7	152.9	91.0
1999	257,803	1,145,879	239,695	139.2	168.7	102.4
2000	288,253	1,238,456	260,076	145.7	180.4	104.8

자료: 김동석 외(2002), 현진권·권호영(2002).

참고문헌

- 김동석·이진면·김민수,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1963~2000』, 한국개발연구원, 2002.
- 김준영, 『한국의 총자본스톡 민간 및 정부 자본스톡 추계』, 한국경제연구원 1996.
- _____, 「공공경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총유형 자본스톡 추계」, 『공공경제』, 제5권, 제2호, 2000, pp. 47~93.
- 문춘걸·현진권, 「중앙정부의 생산성 평가: 1970~2002년간의 시계열분석」,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재정경제부, 「종합투자계획 관련 문답자료」, 2004.
- 표학길,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추계(1953~2000)」, 『한국경제의 분석』, 제9권, 제1호, 2003, pp. 203~274.
- 현진권·권호영, 「정부부문의 자본스톡 추계」, 『재정논집』, 제16집, 제2호, 2002, pp. 21~43.
- Aschauer D.,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3, 1989, pp. 177~200.
- Baffes, J and A.Shar, “Productivity of Public Spending, Sectoral Allocation Choices,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6, 1998, pp. 291~303.
- Becker, G., Murphy, K., and R. Tamura, “Human Capital,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1990, pp. S12~S37.
- Glomm, G and B. Ravikumar, “Productive Government Expenditure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Vol. 21, 1997, pp. 183~204
- Romer, P.,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1986, pp. 1002~1037.
- Slemrod, J., “What Do Cross-Country Studies Teach about Government Involvement, Prosperity, and Economic Growt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5, pp. 373~431.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이해와 분석



박 상 원 초청연구위원 (swpark@kipf.re.kr)

I. 정부조달의 현황과 계약방법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것, 정부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것 등이 모두 정부조달의 예가 된다.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그 재원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의 전문화와 고급화가 강조되고 있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행정 및 선진화된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체 조달기능의 확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조달행정의 선진화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정부부문 구매, 비축물자의 관리,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2002년 후반부터 전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거래를 구매결정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 모두 전자화한 나라장터 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을 운영함으로써 공공분야 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높여 나가고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그 재원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행정 및 선진화된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자체 조달기능의 확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효율성, 중소기업 육성, 지방경제 활성화, 부패방지 등으로 그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조달의 효율성이다. 정부조달의 효율성은 같은 품질의 제품을싼 가격에, 혹은 같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현재 우리나라의 조달시장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조달시장 총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24조원 정도이며 이는 정부예산 대비 약 13%를 차지하는 것이다. <표 1>과 <표 2>는 최근 조달규모의 추이와 계약방법별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내자·외자·시설공사 조달규모 추이

(단위: 억원, %)

연 도	내 자	외 자	시설공사	비축물자	계
2001	69,720 (34.44)	5,066 (2.50)	120,910 (59.72)	6,769 (3.34)	202,465 (100)
2002	74,012 (36.10)	5,587 (2.72)	119,638 (58.35)	5,805 (2.83)	205,042 (100)
2003	81,867 (37.24)	5,519 (2.51)	127,118 (57.82)	5,353 (2.43)	219,857 (100)
2004	91,100 (37.65)	6,435 (2.66)	133,592 (55.28)	10,550 (4.37)	241,677 (100)

주: 1. 내자는 공급실적 기준이고, 시설의 경우 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을 포함.

2. 비축사업은 정부가 물가안정책의 하나로서 물가 불안시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할 물자를 비축해 놓는 것.

자료: 『조달통계』, 2004.

1) 효율성을 정의할 때, 구매자의 효용뿐 아니라 공급자의 이윤까지 모두 고려할 수도 있다.

〈표 2〉 계약방법별 분류(2003년)

(단위: 억원, %)

계약방법별		사업별	내 자	외 자	시설공사	비축물자	계
계			81,867 (100)	5,519 (100)	123,541 (100)	1,894 (100)	212,821 (100)
경 쟁 계 약	소 계		38,444 (47.0)	4,649 (84.2)	119,046 (96.4)	1,776 (93.8)	163,915 (77.0)
	일반경쟁		35,501 (43.4)	4,589 (83.1)	68,923 (55.8)	1,776 (93.8)	110,789 (52.1)
	지명경쟁		333 (0.4)	60 (1.1)	27 (0.1)	- (-)	420 (0.2)
	제한경쟁		2,610 (3.2)	- (-)	50,096 (40.5)	- (-)	52,706 (24.7)
단체수의계약			32,820 (40.0)	- (-)	- (-)	- (-)	32,820 (15.4)
일반수의계약			10,603 (13.0)	870 (15.8)	4,495 (3.6)	118 (6.2)	16,086 (7.6)

주: 1. 장기계속의 2차년도 이후 계약분은 초년도 계약방법에 포함. 국제입찰(시공능력공사역), 등급별 경쟁계약, 지역제한은 일반경쟁에 포함.
 자료: 『조달통계』, 2003.

〈표 2〉에 나타나는 계약방법들은 본고의 핵심적인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방법은 크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경쟁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들로 하여금 모두 입찰에 참가시켜 경쟁토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공급자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경쟁계약은 참여제한 정도에 따라,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특정계약 상대자를 미리 선정하여, 그 공급자와만 공급계약을 맺는 방법이다. 이들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²⁾.

2) 계약방법에 대한 설명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안내를 참조하였음(<http://www.pps.go.kr>).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여러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복수의 공급자와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최종수요자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에 맞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대상 물품의 규격 및 계약조건 등을 공개하고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제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이다. •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 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이에 속한다.
지명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신용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이다. •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비절감 및 절차 간소화의 이득이 있지만,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수의계약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 위에서 언급한 계약방법에 추가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여러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복수의 공급자와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최종수요자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에 맞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본고의 주된 내용이다.

II.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도입

2004년 12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정부조달 물품을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의 도입이다³⁾. 이 제도는 미국의 Multiple Award Schedule(MAS), 캐나다의 Standing Offer 등과 유사한데, 이들 나라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자.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 계약)

-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이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첫째, 컴퓨터, 사무집기 등과 같이 여러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요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유사한 제품들을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다. 셋째, 입찰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각각의 공급자들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그림 1]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구매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기존 제도는 먼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을 정하고 그것을 공시하여,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여러 공급자들이 가격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공급자와 계약하였다. 하지만 다수공급자 계약제도하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규격의 물품들을 제시하게 되고, 구매담당 공무원은 그 기업들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한 후 이들

3)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복수물품제도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하여 사용된 예가 드물어 구체적인 비교는 생략하고자 한다.

4) 우리나라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미국의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의 홈페이지에는 Multiple Award Schedule 을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http://www.gsa.gov.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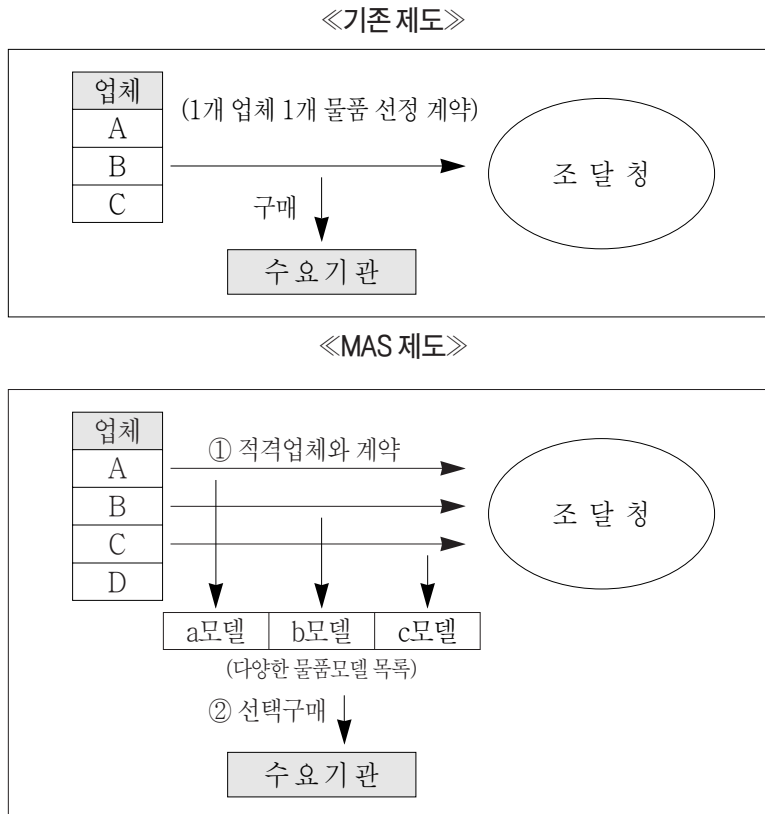
"Multiple Award Schedules(MAS):These Schedules cover contracts awarded to firms supplying comparable commercial supplies and services at varying prices. They provide customers with the variety and the flexibility necessary to select the best value item that meets their needs at the lowest overall cost alternative(considering price, special features, administrative costs, etc.)"

백순현(2004)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행해지는 유사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특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첫째, 컴퓨터, 사무집기 등과 같이 여러 수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요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유사한 제품들을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다. 셋째, 입찰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각각의 공급자들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각각의 물품들이 서로 다르므로 입찰을 통한 가격경쟁을 할 수 없고, 각각의 업체와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기관은 이렇게 계약된 물품들 중에서 자신들의 기호에 가장 맞는 물품을 선택하여 원하는 양만큼 공급받게 된다⁵⁾.

[그림 1] 기존제도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절차비교⁶⁾



5) 이렇게 계약된 물품들의 목록을 미국에서는 schedule이라고 부르며, 일종의 카탈로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6)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보도 참고자료에서 인용.

III. 모형을 통한 분석

시행령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각 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기본 의도이다⁷⁾. 백순현(2004)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는데, 41.62%가 품목의 다양성에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다수공급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가격경쟁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즉 다양한 물품이 공급되므로 입찰을 통한 직접적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각각의 공급자들은 자신의 물품에 차별성을 부과하여 약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업조직론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상품다양화로 인해 독점적 위치가 부분적으로나마 기업에 허용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장단점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분석의 편의를 위해 1명의 수요자(기관)가 존재하여 1단위를 수요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수요하는 물품의 규격(characteristics)을 0과 1 사이의 실수 q 로 표시하자. 책상을 예로 들면, q 는 책상의 높이 혹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의 효용은 $v(q, \hat{q}) = \hat{v} - (\hat{q} - q)^2 - p$ 로 표시될 수 있는데, 여기서 \hat{v} 는 주어진 상수이고, p 는 이 물품의 가격이다. $(\hat{q} - q)$ 는 소비의 제약으로부터 오는 비효용을 나타내는데, \hat{q} 는 이 수요자가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물품의 규격을 말하며 q 는 실제 소비하는 물품의 규격이다. 예를 들어 $\hat{q} = \frac{1}{2}$ 이고 $q = \frac{1}{4}$ 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규격을 소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hat{q} - q)^2 = \frac{1}{16}$ 만큼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hat{q} 는 $[0, 1]$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이 물품은 2명의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데, 이들을 각각 h 와 l 로 표시하자⁸⁾. 이들이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c_h(q) = \hat{c} + t(1-q), \quad c_l(q) = \hat{c} + tq$$

즉 h 는 $q=1$ 을 가장 잘 생산하므로 1에서 멀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l 은 $q=0$ 을 가장

7)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시 발표된 재경부 공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130호)에 따르면, "각 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이 개정사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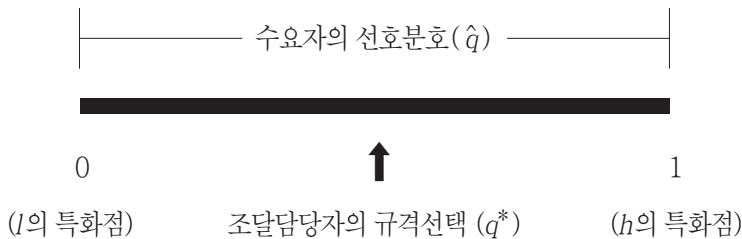
8) h 는 high의 약자이며, l 은 low의 약자이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가격경쟁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즉 다양한 물품이 공급 되므로 입찰을 통한 직접적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각각의 공급자들은 자신의 물품에 차별성을 부과하여 약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상품다양화로 인해 독점적 위치가 부분적으로나마 기업에 허용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잘 생산하므로 0에서 멀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때, t 와 \hat{c} 는 주어진 상수이며 $\hat{v} - \hat{c}$ 는 충분히 크다고 가정한다. 조달담당자(agent)는 계약제도를 결정하며 수요자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달담당자가 기존의 경쟁제도를 사용한다면, 먼저 공통규격 q^* 가 조달담당자에 의해 공시되고 두 기업은 그 규격하에서 공급가격 p_h 와 p_l 을 제시하게 된다. 두 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의 규격이 동일하므로 조달담당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자를 선택하게 되고, 제시된 가격으로 물품이 공급된다.

[그림 2] 경쟁입찰제도



이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first price auction이므로 적당한 tie-breaking rule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균형전략을 구할 수 있다⁹⁾. q^* 가 주어졌을 때,

$$q^* \geq \frac{1}{2} \Rightarrow p_h = \hat{c} + tq^*, p_l = \hat{c} + tq^* (h \text{가 선택됨})$$

$$q^* < \frac{1}{2} \Rightarrow p_h = \hat{c} + t(1 - q^*), p_l = \hat{c} + t(1 - q^*) (l \text{이 선택됨})$$

9) Fudenberg and Tirole, *Game Theory*, 1991을 참조.

이 균형하에서의 수요자 (기대)효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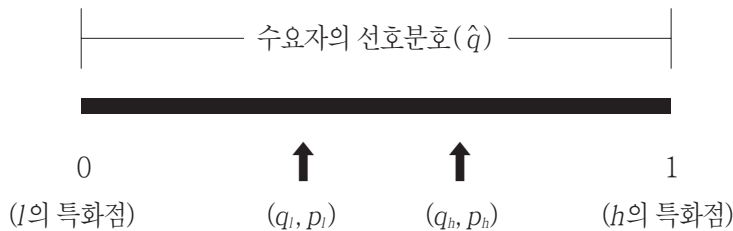
$$q^* \geq \frac{1}{2} \Rightarrow \int_0^1 [\hat{v} - (x - q^*)^2 - \hat{c} - tq^*] dx$$

$$q^* < \frac{1}{2} \Rightarrow \int_0^1 [\hat{v} - (x - q^*)^2 - \hat{c} - t(1 - q^*)] dx$$

이 된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달담당자는 $q^* = \frac{1}{2}$ 을 선택하게 되고 수요자의 기대효용은 $\hat{v} - \hat{c} - \frac{1}{2}t - \frac{1}{12}$ 이 된다. 조달담당자가 $q^* = \frac{1}{2}$ 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두 공급자의 비용 차이를 줄임으로써 더 큰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q^* = \frac{1}{2}$ 일 때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반면에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급자는 규격 q_h 와 q_l 을 결정하고 주어진 (q_h, q_l) 하에서 (p_h, p_l) 을 제시한다. 조달담당자는 (q_h, p_h) 와 (q_l, p_l) 을 심사하고 계약 (contracts)을 체결 (awards) 한다¹⁰⁾. 수요자는 계약된 스케줄 $((q_h, p_h)$ 와 $(q_l, p_l))$ 중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림 3]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적당한 가정을 첨가한 후, 다음의 균형 (subgame perfect equilibrium)이 존재함을 보일 수 있다¹¹⁾.

$$(q_h, q_l) = (1, 0) \ \& \ (p_h, p_l) = (\hat{c} + 1, \hat{c} + 1)$$

10)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가격협상 과정은 생략하였으며, 두 기업 모두 좋은 재무상태 등을 유지하고 있어 계약이 체결된다고 가정한다.

11) J. Tirole,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88 참조.

t 의 크기는 생산비용이 규격 차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품목다양화의 필요성을 대표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t 값이 커서 품목다양화의 이득이 클 경우 이 제도가 기존의 경쟁제도보다 우월하지만, t 값이 작을 경우에는 가격경쟁 완화의 단점이 부각되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보다 기존의 경쟁제도가 우월한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의 수요자의 기대효용은

$$\int_0^{1/2} [\hat{v} - x^2 - \hat{c} - 1] dx + \int_{1/2}^1 [\hat{v} - (x-1)^2 - \hat{c} - 1] dx = \hat{v} - \hat{c} - \frac{13}{12}$$

이 결론은 산업조직론에서 잘 알려진 것이다. 즉 규격 혹은 상품의 다양화가 도입되었을 때, 기업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상품다양화를 유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q_i 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 h 의 선택문제를 살펴보자. q_h 가 증가하면, 중간에 위치한 수요자가 l 로 이동하는 수요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동시에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상품다양화로 인한 경쟁약화 효과(+)도 발생한다. 이 때 두 가지 양(+)의 효과가 한 가지 음(-)의 효과를 압도하여 최대의 상품(규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두 제도하에서의 소비자 효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t \leq 2 \Rightarrow$ 경쟁입찰제도가 우수하여, 수요자의 효용을 높인다.

$t \geq 2 \Rightarrow$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우수하여, 수요자의 효용을 높인다.

이러한 결론은 전술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단점과 장점을 잘 요약해 준다. t 의 크기는 생산비용이 규격 차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품목다양화의 필요성을 대표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t 값이 커서 품목다양화의 이득이 클 경우 이 제도가 기존의 경쟁제도보다 우월하지만, t 값이 작을 경우에는 가격경쟁 완화의 단점이 부각되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보다 기존의 경쟁제도가 우월한 것이다.

IV. 시사점 및 결론

지금까지 새로 도입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설명하고 간단한 모형을 통해 그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즉 조달담당자의 가격협상 및 유보가격의 결정, 정부 외의 다른 구매자의 존재, 경매비용 등이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생략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다수공급자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첫째, 수요기관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경우.

둘째, 제품을 규격화하기 힘들 경우.

셋째, 정부조달 이외의 다른 시장이 존재하여, 이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본문에서는 가격경쟁 완화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만약 정부조달 이외의 다른 시장이 존재하여 그곳에서 이미 경쟁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가격상승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정부의 가격협상도 수월할 것이다.

넷째, 경매비용이 크거나, 수요가 발생한 후 바로 공급되어야 하는 경우. 통일규격을 공시하고 입찰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매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자격이 충족되는 모든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때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물품조달은 지난 40년간 입찰과 경쟁에 의한 공급자 선택이 그 근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계약방식은 상품의 다양화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크게 부각되던 환경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였고 정부조달의 고객인 정부기관들은 가격 중심의 구매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도입되어 정부조달의 많은 불만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조달담당자들은 이 제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유용하게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IPR**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하였고 정부조달의 고객인 정부기관들은 가격 중심의 구매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도입되어 정부조달의 많은 불만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백순현, 「한국 조달청의 정부구매/조달제도 선진화방안」,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Fudenberg and Tirole, *Game Theory*, 1991.

Tirole,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88.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정재호 전문연구위원(jcheung@kipf.re.kr)

I. 서론

얼마 전까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각종 부담금은 분명한 기준 없이 신설 및 변경 등이 이루어졌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는 부담금은 100여개이며, 징수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8.8조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부담금 징수규모는 내국세와 GDP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기준으로 2000년에는 0.7%에서 2003년에는 1.2%로 증가하였고, 국세수입 대비 기준으로는 2000년 4.5%에서 2003년 7.7%로 증가하였다.

특히, 환경, 건설 그리고 복지 관련 부담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를 주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들 분야의 부담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부담금에 대한 개념과 관리체계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는 우리나라 부담금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개관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부담금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담금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는 부담금은 100여개이며, 징수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8.8조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부담금 징수규모는 내국세와 GDP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기준으로 2000년에는 0.7%에서 2003년에는 1.2%로 증가하였고, 국세수입 대비 기준으로는 2000년 4.5%에서 2003년 7.7%로 증가하였다.

I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

1. 부담금의 개념¹⁾

가. 부담금의 개념 및 특징

흔히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라고 정의된다²⁾.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제2조)은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i) 재정수요보다는 특정 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며 ii)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담금은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부담금은 강제성을 띠며,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둘째,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정부사업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개별 경제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의 규모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비하여, 조세는 담세능력을 바탕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³⁾. 특

1) 본절은 손원익 외(2004) 참고함.

2) 이상우·임혁진(1995).

3) 부담금운용평가단(2003).

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업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넷째,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금전적 부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금전적 부담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부담금과 유사한 개념

부담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부담금에 포함되는 용어로는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이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분담금에 대해 손원익 외(1998)는 부담금 중 관련된 이해집단이 그 부담을 서로 분담하는 경우에 대해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표적 분담금으로는 관광지 등 지원시설이용자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원인자분담금,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분담금 등이 있다.

부과금은 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은 거래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과금의 예로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축산폐수 등 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을 들 수 있다. 부가금은 부과금과 달리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대표적 예로는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금전적 부담으로 예치금이 있다. 소하천소요공사비에치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원상회복예치금, 복구예치금 등이 대표적 예치금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치금은 정부가 특정 행동을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한 후 이를 이행한 경우 금전적 부담을 해지시켜 준다는 특성이 있다.

여러 가지 기금출연금도 부담금의 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 기금출연금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등이 있다. 한편, 기여금도 기금출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 수수료와 사용료는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지 않는 부담금과는 구별된다.

부담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부담금에 포함되는 용어로는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이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담금의 관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담금의 정의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제2조).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제3조).

나. 부담금의 부과요건 및 원칙

부담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 등’이라 함)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제4조).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담금은 설치목적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제5조).

다.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기준 및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법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매년 3월 말일까지)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출받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최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마. 부담금 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담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 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제8조).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장관 소속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제9조).

- ①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2002년 1월 29일 처음으로 총 11명(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금은 민간위원 1명이 늘어나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이며 정부위원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재정경제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차관보,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세 외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1961년에 최초로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가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자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총 4회의 심의회가 개최되어 부담금 신설안 심의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3년에도 4회에 거쳐 심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8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III. 부담금의 현황

1. 부담금의 변천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세 외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1961년에 최초로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가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자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부담금 평가에 따른 부담금 정비 결과 2004년 1월 1일 기준 운용·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2002년보다 2개 감소한 100개가 되었다. 2001년 9개와 1998년, 2002년 각각 1개의 부담금이 폐지되었으나 신설되는 부담금이 더 많아서 부담금 수는 2002년까지 꾸준히 증가되었다.

부담금의 신설 현황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부담금 신설 초기인 1960~1970년대에는 부담금 신설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는 7개, 1970년대에는 7개의 부담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담금 신설은 크게 증가하여 총 20개의 부담금이 만들어졌고, 1990년대에는 62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었다. 2000년~2003년까지는 17개의 부담금이 신설되고 6개가 부담금 관리대상으로 추가되어 23개의 부담금이 증가하였다.

〈표 1〉 연대별 부담금 신설 추이

(단위: 개)

	계	'61~'69년	'70~'79년	'80~'89년	'90~'99년	'00~'03년
신 설	119	7	7	20	62	23
폐 지	19	-	-	-	1	18
누 계	100	7	14	34	95	100

자료: 기획예산처, 『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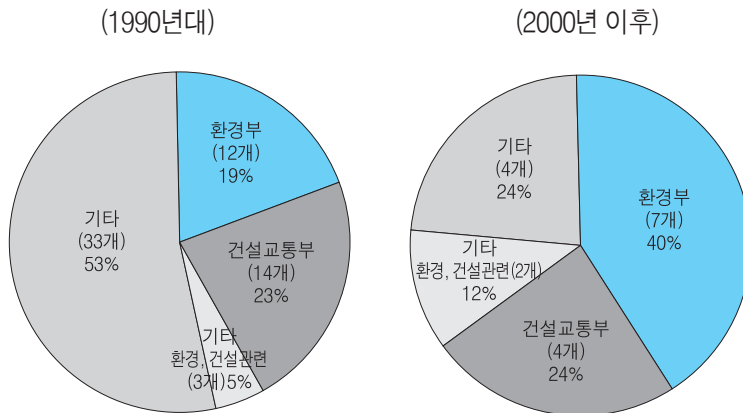
1990년대에 부담금 신설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가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질·폐기물·소음·해양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둘째,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셋째,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녹지보존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소관 부담금이 많이 신설되었는데, 환경부 소관에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12개 부담금이 설치되었고, 건설교통부 소관에 각종 원인자부담금, 이용자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이밖에도 농림부 소관에 쓰레기유발부담금, 해양수산부 소관에 해양오염방지부담금 등이 신설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2003년까지 신설된 17개의 부담금 중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신설 부담금은 1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관에 신설된 부담금은 대부분 수계별 물 관리와 관련된 부담금이며, 건설교통부 소관에 신설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고, 해양수산부 소관에도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신설되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 이후 신설된 부담금의 약 절반 정도가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이며, 2000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그림 1]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신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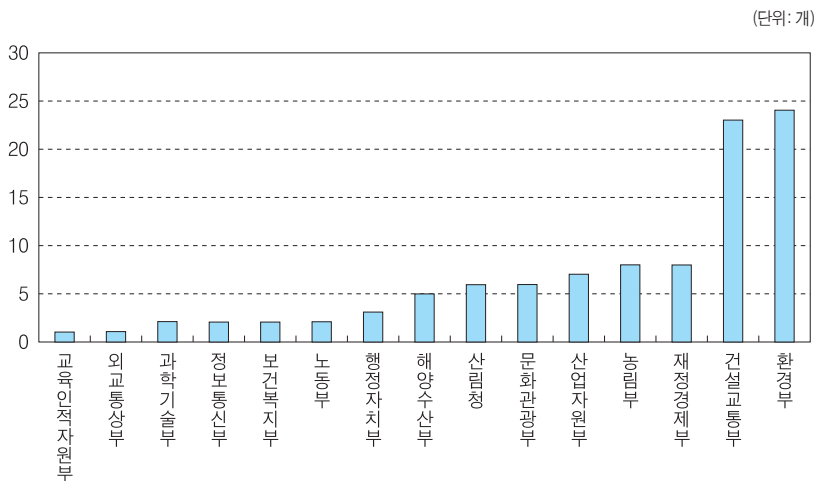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면, 환경부가 2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건설교통부가 23개이다. 이 밖에, 농림부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8개, 산업자원부가 7개, 문화관광부와 산림청이 각각 6개, 해양수산부가 5개, 행정자치부가 3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각각 2개,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8개의 부담금이 폐지 및 삭제되고 6개의 부담금이 추가되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수는 2002년보다 2개 감소한 100개이다. 2003년에는 부담금 평가결과에 따라 6개의 부담금 폐지되었다. 또한 2001년 부담금 정비시 2004년부터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관광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었으며, 산업단지공동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사실상 부담금에 해당하는 기존 6개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총 100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면, 환경부가 2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건설교통부가 23개이다. 이 밖에, 농림부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8개, 산업자원부가 7개, 문화관광부와 산림청이 각각 6개, 해양수산부가 5개, 행정자치부가 3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각각 2개,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림 2] 소관부처별 부담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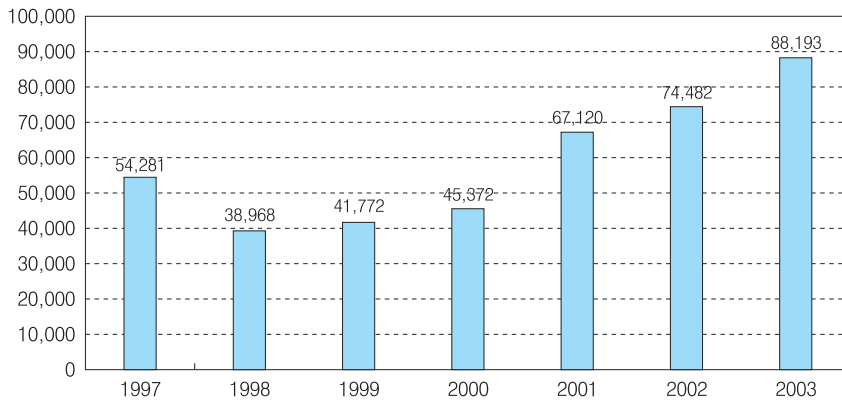
2. 징수실적

가. 전체 징수실적

1998년 IMF 외환위기로 부담금의 부과 중지 및 감면,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축소 등으로 징수실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시출연금과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의 신설 등으로 2000년보다 2조 1,748억원(47.9%)이 늘어났고, 2002년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제도 정착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담배에 대한 부담률 인상 등으로 2001년보다 7,362억원이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부과, 징수하기 시작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징수액이 6,249억원 순증되었고 예치기준액을 단계적으로 인상조치한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징수액이 3,030억원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3년의 총 부담금 징수실적은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1조 3,711억원이 증가(18.4%)하였다.

[그림 3] 부담금 징수실적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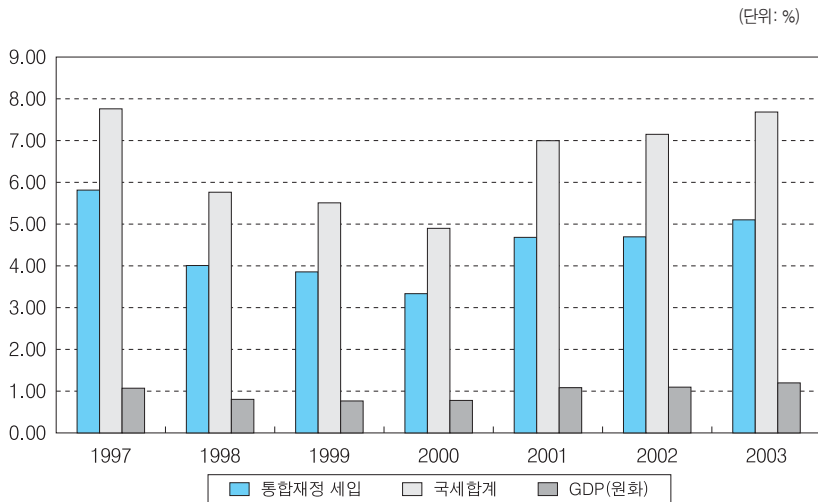


1998년 IMF 외환위기로 부담금의 부과 중지 및 감면,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축소 등으로 징수실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3년의 총 부담금 징수실적은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1조 3,711억원이 증가(18.4%)하였다.

우리나라 부담금의 GDP 대비 비중은 약 1% 수준으로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 징수규모도 2000년 GDP 대비 0.7%에서 2003년에는 1.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부담금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도 2000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1997년 국세수입 대비 6.8%에서 2000년에는 4.5%로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03년에는 7.7%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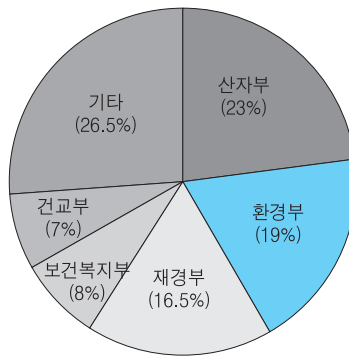
[그림 4] 부담금 비중 추이



나. 부처별 징수실적

2003년말 부담금 징수액은 총 8조 8,193억원이다. 이 중 산업자원부가 가장 많은 2조 315억원으로서 전체 징수실적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환경부가 1조 6,744억원으로 19%, 재정경제부가 1조 4,566억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는 각각 215억원과 14억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5]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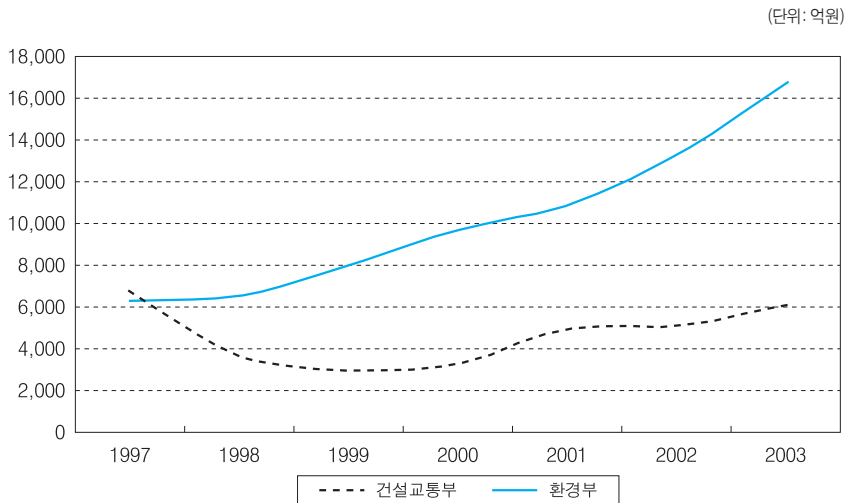
2003년 건설교통부 관련 부담금의 징수실적은 1997년과 유사하나, 환경부 관련 부담금의 징수실적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되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향후 건설 관련 징수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도의 징수실적은 그동안 압도적으로 징수실적이 가장 많았던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고, 징수금액은 199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평균 약 137억원 정도였으나 2002년 5,109억원, 2003년 7,02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부터 징수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2002년 2월부터 2원/갑에서 150원/갑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4년 12월 30일부터 150원/갑에서 354원/갑으로 204원/갑 인상되어 이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액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⁴⁾. 단순히 담배

4) 건강증진부담금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204원 인상되고 담배소비세는 131원, 지방교육세는 66원, 폐기물부담금은 3원, 연초농가지원출연금은 5원 올리는 등 담배 관련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409원 인상되었다.

2003년말 부담금 징수액은 총 8조 8,193억원이다. 이 중 산업자원부가 가장 많은 2조 315억원 으로서 전체 징수실적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환경부가 1조 6,744억원으로 19%, 재정경제부가 1조 4,566억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는 각각 215억원과 14억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6]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관련 부담금 징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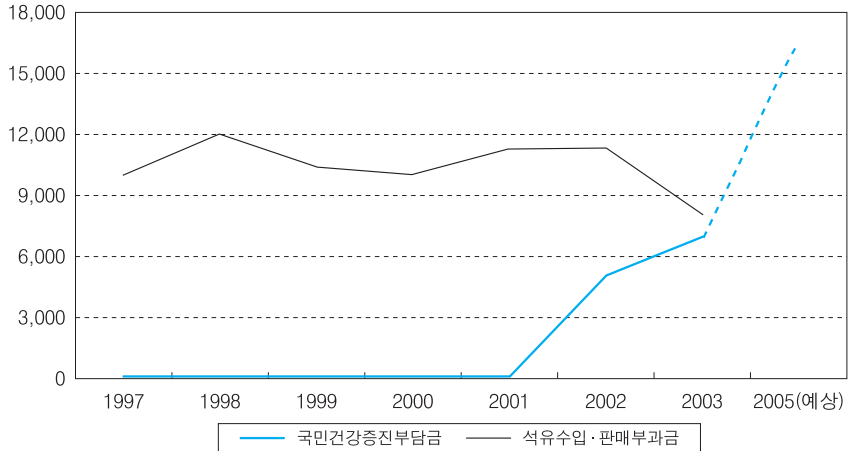


소비가 2003년 기준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05년 이후 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실적은 1.6조원을 상회하게 되어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중 가장 큰 규모의 부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5) 담배가격의 변화에 의해 담배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는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김용익 교수팀에 의뢰 조사한 결과, 담배값을 500원 올리면 흡연 감소율은 1.7~3.4%에 달한다는 자료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담배값 인상시점에선 흡연 감소추세를 보이겠지만 2~4개월만 지나면 다시 흡연율이 상승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2003년 담배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2004년 담배판매량은 2003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7]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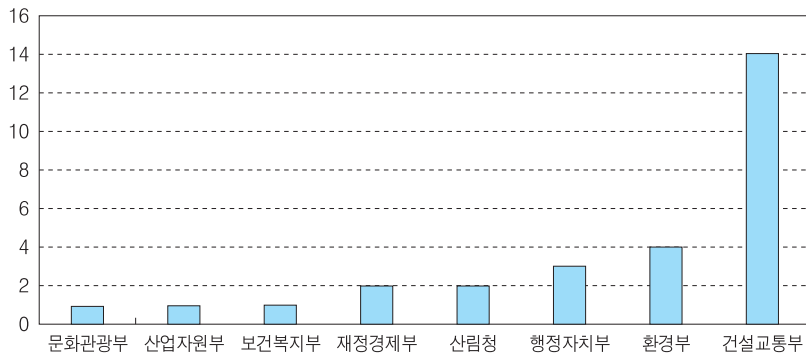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징수실적이 없는 총 28개의 부담금을 소관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14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부 4개, 행정자치부가 3개, 산림청과 재정경제부 각각 2개 그리고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각각 1개 등이다.

[그림 8] 최근 3년간 연속 징수실적이 없는 소관별 부담금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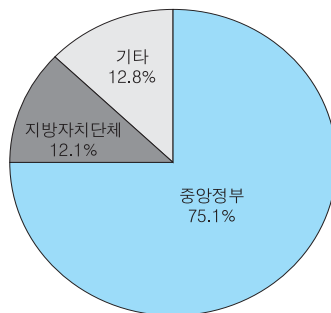
2003년에 징수된 총 8조 8,193억원의 부담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에서 사용되었다. 전체 부담금의 75.1%인 6조 6,237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었고, 12.1%인 1조 674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조 1,282억원이 공단 등 기타 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었다.

3. 부담금 사용

2003년에 징수된 총 8조 8,193억원의 부담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에서 사용되었다. 전체 부담금의 75.1%인 6조 6,237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었고, 12.1%인 1조 674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조 1,282억원이 공단 등 기타 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었다.

부처별로 보면,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는 소관의 모든 부담금 수입을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부담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 해양수산부도 공단 등 기타기관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는 소관 부담금 수입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기관이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그림 9] 부담금 사용주체 구분



2003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55.1%인 4조 8,564억원이 중앙정부 기금 수입으로 사용되었다. 기금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29개(11개 소관)이다. 이 중 대다수의 기금은 1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으나, 정보화촉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은 2개의 부담금을 수입으로 하고 있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3개의 부담금(2개의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가장 많은 9,971억원의 부담금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7,02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6,249억원의 부담금을 사용하였다.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된 부담금 규모는 2003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20%인 1조 7,673억원이다.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특별회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6개이며, 이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3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2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9,002억원의 부담금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가 5,745억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가 1,538억원의 부담금을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규모는 2003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7.3%인 6,419억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4.8%인 4,255억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사용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계상된 수입은 주로 관련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로 계상되고, 일부가 일반회계로 계상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1,961억원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272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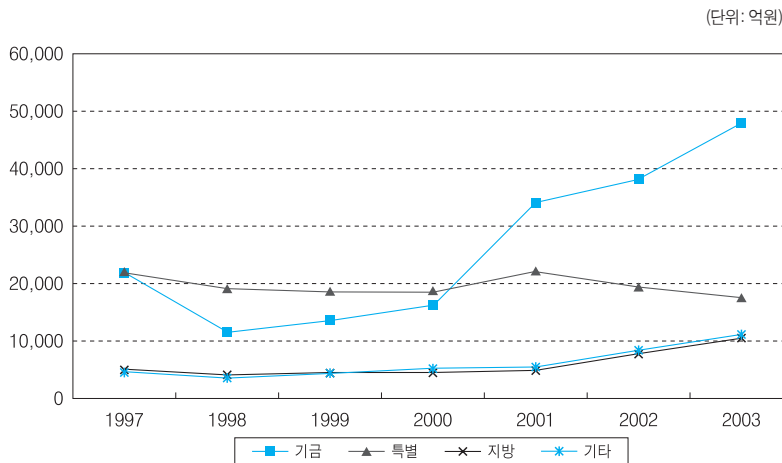
이 밖에 2003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공단 등 기타 기관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전체의 12.8%인 1조 1,282억원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납부자에게 반환해 주는 예치금으로 그 규모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의 68%인 7,628억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손해배상보장사업자(국가로부터의 수탁사업자: 대한손해보험협회)가 1,297억원의 손해배상보장사업부담금을 사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1,218억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시설관리공사 등이 1,139억원의 부담금을 사용하였다.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처 추이를 보면, 기금으로 귀속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징수된 부담금 중 절반 이상인 55.1%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처 추이를 보면, 기금으로 귀속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징수된 부담금 중 절반 이상인 55.1%가 중앙정부 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었다. 향후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계상되어 사용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으로 귀속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 중앙정부 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었다. 향후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계상되어 사용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으로 귀속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0] 부담금 총징수액의 귀속별 변화 추이



IV. 향후 부담금제도 관련 연구과제

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결과 부담금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 기존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전반적인 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일본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된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국가

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일본의 경우, 부담금보다는 보조금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면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며, 우리나라는 부담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한 것으로서 이는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토대로 관련정책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는 부담금은 100여개에 이르며, 이들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내국세와 GDP보다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이런 현상에 주목하면서 향후 부담금제도 관련 연구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절대액을 기준으로 개별 부담금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부담금만을 볼 경우 우리나라 부담금제도의 전체적인 규모와 체계가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본고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별 부담금에 대한 논의는 현재 100여개의 부담금이 존재하는 상황인바 본고에서 이를 모두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개별 부담금별로 그 부담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부담금에 대해 성격상 조세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조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역할을 부담금이 하고 있는 것인지 등 조세와 부담금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이 내국세와 GDP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별, 소득계층별 부담수준과 부담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실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부담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등과 비교하거나 혹은 이를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부담수준을 밝힘으로써 부담금제도의 신설과 증설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부담금 부담수준이 빠르게 증가하여 내국세의 8%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취약계층과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조세보다 부담금 활용에 더욱 매력을 느끼는 것은 조세보다 부담금에 대한 납부 저항이 낮기 때문이다. 즉, 조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과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특정인 또는 사업자에 부과되며 특정 또는 소수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부담금은 수혜나 피해에 대한 소수인의 부담이므로 조세보다는 납부에 대한 저항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부담금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로 전환하여 일반 재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담금의 경우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담금기본관리법에서도 타당성 심사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기

우리나라는 부담금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 기존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에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토대로 관련정책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준이 있다.

부담금운용평가단(2003)에 의하면 환경세 도입과 관련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축산폐수 등 배출부과금 등의 환경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밖에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의 레저세 전환, 회원제 골프장시설입장료부가금의 특별소비세 전환,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로의 전환 등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담금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2005년 이후 징수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한편, 부담금 규모 축소는 기금 정비외도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담금은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되고, 특히 기금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금에 의한 지출은 일반회계에 비해 사업의 지속성, 효과성 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사업이 정치적 요인보다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의한 지출비중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정부의 부담금에 대한 의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IP**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년호.
 부담금운용평가단, 『부담금 평가』, 2003.6.
 손원익·김상헌·김진수·박기백·한도숙,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손원익·정재호·김형준·김상헌,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이상우·임혁진, 『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 12.

〈부표 1〉 소관부처별 부담금 현황(2003년 12월기준)

소관 부처명	부담금 명칭
재경경제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공격자금상환기금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금
행정자치부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문화관광부	국외여행자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이용자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원인자분담금,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모금(문화예술진흥원)
농림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농지조성비, 농수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 쓰레기유발부담금, 농수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인삼산업법), 대체초지조성비, 축산물수입이익금
산업자원부	안전관리부담금, 공동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담금,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부담금
환경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수질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손괴자부담금(수도법), 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원상회복예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물이용부담금(한강), 물이용부담금(금강), 물이용부담금(낙동강),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금강),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 섬진강)
노동부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복구에치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익자부담금(광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해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시공법),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과밀부담금,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소음부담금,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산물수입이익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부담금

자료: 기획예산처, 『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04.

기획

기획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2004 미국의 세제개편과 향후 동향

/ 장근호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재정포럼』에서는 2005년 1월호부터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기획특집으로 마련하여 매월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 세 번째로 「2004 미국의 세제개편과 향후 동향」 내용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2004 미국의 세계개편과 향후 동향



장근호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I. 서론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1~2003년 사이에 경제성장을 위하여 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세계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EGTRRA & JGTRRA)¹⁾. 이후 2004년에 발효된 근로가구 감세법(Working Families Tax Relief Act of 2004, HR1308)은 그 당시 만료 예정이던 이월 감면법의 시효를 2010년까지 연장한 법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미국 고용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HR4520)은 원래 내국세법상의 해외소득(FSC/ETD)에 관한 규정이 WTO에서 불법 보조금으로 판정받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제조업자와 일부 서비스업자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법인세 인하가 단행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년 10월에 입법화된 이들 두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제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개혁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II. 2004년 근로가구 감세법(Working Families Tax Relief Act of 2004)

1. 개인소득세

근로가구 감세법은 2004년 12월에 만료되는 소득세 감세규정을 연장하고 2003년 12월에 이미 만료된 기업 관련 공제를 소급 연장한 법으로 약 9,400만명, 그 중에서도 주로 중산층과 기업이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of 2001(EGTRRA) and The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of 2003(JGTRRA).

근로가구 감세법은 2004년 12월에 만료되는 소득세 감세규정을 연장하고 2003년 12월에 이미 만료된 기업 관련 공제를 소급 연장한 법으로 약 9,400만명, 그 중에서도 주로 중산층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규모는 1,460억달러에 이르며 개인은 약 1,320억달러, 기업은 140억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규모는 1,460억달러에 이르며 개인은 약 1,320억달러, 기업은 140억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감면은 2001년의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법(EGTRRA)의 일몰규정 적용을 받아 2010년에 폐기될 예정이다. 한 예로 현재 1천달러에 상당하는 자녀세액공제는 다시 5백달러로 인하된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확대, 세제상의 결혼에 따른 차별규정 폐지, 10% 과세구간, 대체최소세의 면세범위 확대와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공제 등 20개에 이르는 기업

의 공제조항 등을 포함한다.

개편 내용에서 우선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2010년까지 자녀당 1천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소득이 10,4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0%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납세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부부합산의 경우 14,600달러(독신, 7,300달러)로 인상하고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계하였다.

〈표 1〉 2005년 개인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부부합산 기준)

(단위: 달러, %)

한계세율	법 제정 이전	법 제정 이후
10	0~12,000	0~14,600
15	12,001~53,450	14,601~59,400
25	53,451~119,950	59,401~119,950
28	119,951~182,800	119,951~182,800
33	182,801~326,450	182,801~326,450
35	326,450 이상	326,450 이상

자료: "Working Families Tax Relief Act of 2004," CCH Tax Briefing Special Report, CCH, Oct. 2004.

원래 1969년 고소득층이 다양한 과세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납세를 기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체최소세 (Alternative Minimum Tax)는 점차 그 대상이 중산층에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2004년 현재 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인 납세자 가운데 9%가, 그리고 2010년에는 소득 10만달러 이하인 납세자 가운데 52%가 대체최소세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미국 의회는 2005년 1년간 한시적으로 대체최소세 적용 소득의 면세범위를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최소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독신의 경우 40,250달러, 부부는 58,000달러로 상향 조정, 1년간 적용하고 부양자, 자녀 세액공제와 주택융자금 공제 등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개인공제를 대체최소세 납세의무액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허용하였다.

이 밖에 의무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는 책 구입과 강의자재 구입비용 250달러까지 추가로 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above-the-line deduction). 미국 교육협의회에 의하면 초등 및 중등교사들이 학생들 교육을 위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450달러를 자기 소득에서 책과 기타 강의자재 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미국 세법상 부양자녀 면제,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 다양한 세법조항에서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는 과세상의 자녀의 정의를 미국 의회는 납세자 보호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일하였다. 즉, 과세상의 자녀는 친·양

자와 형제자매 그리고 이들 친족의 자녀를 포함하며 1년 중 절반 이상 납세자의 주택에 거주하고²⁾ 나이 기준은 부양자녀의 경우 19세 이하(학생의 경우 24세)이어야 하고 자녀세액공제에서는 17세 이하여야 한다.

한편, 2004년에 개편되지는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2008년까지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15% 세율(소득세 한계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5%)이 적용되고 2009년에 20%(10%)로 복귀될 예정이다. 배당소득도 2008년까지는 감면된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 14세 이하의 납세자가 받은 이자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처음 8백달러까지는 비과세되고 그 다음 8백달러는 10%(장기 양도소득은 5%)로 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은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한편 사회보장세(OASDI)에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최대 임금은 87,900달러(즉, 6.2%로 과세하면 최대 세금은 5,45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고 의료보장세(Medicare)는 여전히 1.45%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한편 증여세에서 면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변함 없지만 한시적으로 폐지가 예정된 유산세의 경우 면세액이 150만달러로 인상되었고 2006~2008년까지는 200만달러, 2009년에는 350만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유산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2004년 48%로 인하되었고 이후 2005년 47%, 2006년 46% 그리고 2007~2009년에는 45%로 인하될 예정이다.

2)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별거 기간은 납세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기업의 경우 2003년을 전후하여 폐지된 약 20개의 기업 조세감면 조항을 거의 2006년까지 연장 혹은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 예로 2004년 6월~2006년 사이에 지출 혹은 발생한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여 기업은 약 43억달러에 이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2. 기업관련 공제

기업의 경우 2003년을 전후하여 폐지된 약 20개의 기업 조세감면 조항을 거의 2006년까지 연장 혹은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 예로 2004년 6월~2006년 사이에 지출 혹은 발생한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여 기업은 약 43억달러에 이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2003~2006년 사이에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기술과 컴퓨터 및 부품을 학교나 도서관 등에 기부하면 이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IRC 170(e)(6)). 이 외에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공제 혹은 2004~2005년에 구입한 전기가동차나 청정연료 자동차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25~75%가 아닌 100% 공제를 허용하였고, 마지막으로 1998~2005년 사이에 한계 수익점에 있는 유전으로부터 추출된 국내 원유와 가스에 대하여 순소득 100% 이상을 감모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한편 복지 수혜 대상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복지와 고용기회 규정이 있는데 이를 2006년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업자는 이 두 가지 조항 중에서 하나만

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2006년 이후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합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의 경우 2003~2006년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 주는 규정으로 단기 복지 수혜자, 예비역, 전과자 혹은 직업훈련소 참가자 등 장애 혹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 속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2년간 최대 6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현금 임금의 40% 즉, 최대 2,400달러를 세액공제해 준다(근로시간이 400시간 이하인 고용은 25%를 적용). 방학기간중의 학생 인턴십의 경우 공제액이 이의 절반이다. 고용기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가 최소 120시간은 근무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근로복지 세액공제(welfare to work tax credit, WTW)는 장기적인 복지 수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2년간 공제를 허용한다. 고용 후 첫 해에는 임금 1만달러의 35%, 두 번째 해에는 임금 1만달러의 50% 즉, 근로자 1인당 최대 8,5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근로복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최소한 400시간은 근무해야 한다. 근로복지 세액공제의 경우 고용기회 세액공제와 달리 지원대상에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 이외에도 교육 및 부양가족 지원비 그리

고 건강보험료를 포함한다.

III. 2004년 미국 고용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원래 해외소득에 대한 특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하여 논의에 착수한 동법은 이후 제조업자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혹은 소득세) 인하와 소득세법에서 지방정부 소득세를 공제하는 대신 판매세를 공제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을 두는 등 포괄적인 세법 개정으로 변화되었다. 고용창출법은 대상범위가 포괄적이고 복잡하여 1986년 이후 기업에 적용되는 가장 큰 규모의 세법 개편으로 변모한 바 있다. 또한 세금납부를 기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tax shelter)를 남용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강화하였고 비밀보호조항을 완화하였다.

1. 제조업자에 대한 공제(manufacturers' deduction)³⁾

제조업자 공제는 미국 수출업자에게 제공되었던 해외소득(FSC/ETI)⁴⁾의 과세이연 규정이 WTO에 의하여 부당한 무역보조금으로 판정되면서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서 시작하여 국내 제조업자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확대되었다. WTO 판정으로 해외소득에 대한 우대가 철폐됨에 따라서 미국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시작된 논란은 대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업체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로비로 제조업자 공제라는 이름과 달리 포괄적인 감세규정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미 의회는 2005년 해외소득 면제규정(ETI exclusion)을 폐기하는 대신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자와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산업, 농산물 공정산업 등이 2005~2006년 사이에 창출한 소득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공제범위는 2006~2009년에 6%, 2010년부터는 9%로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자의 최고 법인세율은 2005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35%에서 32%로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적용 자격이 있는 소득은 해당되는 제조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입에서 직·간접적인 경비, 손실과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간접적인 경비 등은 제조활동에 할당될 수 있는 경비로 제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국내에서 '상당 부분(in significant part)' 제조 혹은 생산된 물품의 판매, 임대, 교환, 처분 등으로 얻은 총수입⁵⁾에서 비용과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여기에서 상당 부분이란 납세자가 처한 사실관계와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되거나 혹은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노임과 경상비용이 총비용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자료

3) "Fact Sheet: Guidance on Section 199—Income Attributable to Manufacturing Activities," Department of Treasury, Jan. 5., 2005

4) Foreign Sales Corporation/Extraterritorial Income Tax Regime

5) 한 예로 납세자가 건축한 부동산의 임대로 얻은 수입은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므로 제조업 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나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음식점에서 음식료를 판매하는 경우 대중에게 매매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도매의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미국 고용창출법은 원래 해외소득에 대한 특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하여 논의에 착수한 동법은 이후 제조업자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혹은 소득세) 인하와 소득세법에서 지방정부 소득세를 공제하는 대신 판매세를 공제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을 두는 등 포괄적인 세법 개정으로 변화되었다.

보존과 계산방식을 적용한다(safe harbor).

해당 기업들은 전체 과세소득과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데 단, 공제 금액은 납세자가 지급한 근로임금(W-2 wages)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 주식회사, 개인, S 주식회사, 파트너십, 기금이 동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주식회사를 제외한 사업자의 경우 주주 혹은 파트너 차원에서 공제를 산정한다.

제조업자 공제가 적용되는 산업은 미국 국내에서 1) 유형자산, 소프트웨어⁶⁾ 혹은 음향기록 상당부분을 제조 혹은 생산하는 업체 2) 영상물 제작(최소 50% 비용이 미국 국내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 3) 전기·가스, 용수 생산 4)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도로, 전기통신망, 수로 건설 및 수리 5) 부동산 건축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및 건축가 서비스 등 기존의 제조업에서 상당히 확대된 범위의 산업을 포괄한다. 그러나 소매단계에서의 음식료품 판매나 전기수도 가스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매세액 공제(Sales Tax Deduction)

2004년 이후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이 연방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자신이 납부한 지방정부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대신 판매세를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는 판매 영수증을 모아 증빙 가능한 실제 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평균 소비액 등에 근거하여 재무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세액 테이블⁷⁾에 따라 일반 판매세를 공제받고 이에 추가하여 자동차나 보트 등을 매입할 때 납부한 주정부 일반 판매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가 허용되는 판매세는 주정부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es)이 외에 자동차, 보트, 비행기, 주택 및 주택건축 기자재 구입시 납부한 지방정부의 판매세이다. 개인이 소비가 아닌 사업이나 거래행위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판매세는 제외된다. <표 2>에서 보듯이 표준세액 테이블은 주·소득·인적공제자 수 별로 납세자가 지불한 평균 판매세를 재무부 장관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적용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의 주민과 소비가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6) 미국 국내에서 생산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 임대, 처분 그리고 교환을 포함한다. 단, 인터넷상의 사용료는 임대로 간주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Optional States Sales Tax Table*, Publication 600

〈표 2〉 연방소득세에서의 일반판매세 공제금액(뉴욕주)

(단위: 달러, 개)

	1	2	3	4	5	6
0~20,000	224	262	287	306	322	344
40,000~50,000	387	450	492	524	551	588
70,000~80,000	491	570	623	683	697	743
90,000~100,000	549	636	694	739	776	826
180,000~200,000	762	881	960	1,021	1,071	1,141
200,000~	940	1,084	1,180	1,234	1,315	1,399

주: 소득수준과 공제자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음
 자료: *Optional States Sales Tax Table*, Publication 600, IRS

3. 기타 세제개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2006년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장비 구입비용을 최대 102,000달러까지 감가상각하는 대신 즉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Sec. 179). 단, 일년에 획득한 자산이 41만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S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한시법으로 2006년 이후에는 2만 5천달러만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6년 1월 1일까지 비거주 임대건물을 재개발한 경우 39년이 아닌 1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고 일부 음식점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상각할 수 있다. 이 외에 6,000~14,000파운드 중량의 SUV 차량과 승용 트럭의 경우 그 비용을 10만달러까지 구입 즉시 비용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용공제를 2만 5천달러로 제한하여 과세상의 허점을 보완하였다.

한편 이중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S 주식회사의 설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미 의회는 S 주식회사의 요건 중에서 주주 수를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가족의 경우 1명의 주주로 인정하여 가족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금 기금 등이 S 주식회사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기부문화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 당시 공제금액을 지적재산권의 공정한 시장가치와 납세자의 평가지분(basis)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였다. 그 대신 기부받은 자선단체가 이로 인하여 소득을 창출하면 기부자는 추가로 최대 12년간 해당 소득에 대하여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연도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첫 2년간은 소득의 100%, 그리고 그 이후 12년 동안은 매년 10%씩 적게 공제받아야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받는 단체는 기부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내국 세입청(IRS)에게 이 사실을 신고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권, 기업비밀 등을 의미한다.

기부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요건을 강화하였다. 과거와 달리 2004년 이후 5천달러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는 사람은 인

이중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S 주식회사의 설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미 의회는 S 주식회사의 요건 중에서 주주 수를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가족의 경우 1명의 주주로 인정하여 가족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금 기금 등이 S 주식회사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증된 감정서를 받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50만달러(예술품은 2만달러)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는 납세자는 감정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현금, 채고, 상장된 주식과 지적 재산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5년 이후 5백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나 보트, 비행기를 기부할 경우 기부받은 자선단체가 자동차를 사용하면 기부단체가 인정한 금액을, 그렇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공제하고 자선단체는 이를 내국세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조직비용 가운데 각각 5천달러를 즉각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Sec. 197의 무형자산과 마찬가지로 15년간 공제한다. 또한 자격이 인정되는 영화와 TV 제작의 경우 1,500만달러까지 비용공제를 허용하며 이 경우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낙후지역에서 영화 등을 제작하면 공제액이 2천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고용창출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5년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 교육비의 경우 조정후 부부 합산한 과세소득(AGI)이 13만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최대 4천달러, 소득이 13만~18만달러인 납세자는 최대 2천달러까지 학교 공

과금을 공제할 수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그 이상이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종의 보험성 저축인 의료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에 납입하는 납세자는 연간 2,600달러(가족의 경우 5,150달러)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above-the-line deduction).

2005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납세자의 소득은 자녀수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없을 경우 13,750달러, 1명 자녀가 있는 경우 33,030달러, 그리고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37,263달러의 소득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이후 성과급 주식이나 자사주식 혹은 이들 주식 처분으로 얻은 보상은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세 그리고 연방실업세의 과세 임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팔았을 때 얻는 양도차익의 50%가 면세되던 것이 이제는 60%까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Sec. 1202 Empowered Zone Business Stock).

이 외에 인증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⁸⁾의 구입자는 2004년 개인소득세에서 최대 2천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6년에 구입한

8) 2005년 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2000~2005년 사이의 일부 토요타와 혼다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자동차는 5백달러, 그 이후의 자동차 구입에는 공제를 불허한다. 10만달러를 초과하는 부수임금(supplemental wages)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5%로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상의 혜택이 부여된다. 연방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도의 날씨 관련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축산물(식용 제외)을 처분한 영농업자는 2년 대신 4년에 걸쳐서 이를 대체하고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한 납세를 연기할 수 있다. 2004년 이후에는 수산업자도 영농업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income averaging). 또한 산림을 조림한 비용 가운데 1만달러는 84개월 동안 감가상각하는 대신 즉시 공제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연방관련지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할당권을 보유한 사람은 2005년부터 10년간 할당권 1파운드당 7달러를 지원받고 관련 생산업자는 1파운드당 3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지방세제 개편의 예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주택보유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가주택 세금 감면법(Homeowner Tax Relief Act, Act 72 of 2004)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도박세 수입으로 10억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억달러를 학교 구역별로 주민에게 배분하여 교육비용에 충당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금에

서 지원을 받으려면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소득세를 0.1% 인상하여 대응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가주택 세금 감면법은 재산세 세금 감면이 아니라 그 대신 도박세와 소득세로 교육 재원을 대체하는 재원조달방식의 변경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하여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재산세의 약 23%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자가주택 보유자와 농업 종사자로서 상업용 등 비거주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기금의 배분방식은 학생들의 평균 출석, 소득, 주택가격 대비 소득, 재산세율, 지방정부 세입 대비 소득 등을 고려한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각 구역 내에서는 재산세율보다는 평가액의 인하를 통하여 감면을 받는데 모든 주택 보유자가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영구 거주주택 1개당 같은 금액을 감면받는다.

두 번째로 미국 순회법원 항소심⁹⁾은 지방정부 사이의 조세경쟁에 대하여 향후 중요한 시사점이 될 만한 판결을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오하이오 주정부가 다이머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에 제공한 투자세액공제가 헌법상의 자유로운 상거래 혹은 동등한 대우 조항(Commerce Clause)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이머 크라이슬러 회사가 지역 내에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는 대신 주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해 주는 조항이 주 사이의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으로 주정부 사이의 조세경쟁을 제재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조세정책에서 비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한 것이다¹⁰⁾.

그러나 항소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재

9)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Sixth Circuit, *Cuno v. DaimlerChrysler*, 2004 Fed. App. 0293P

10) Chris Atkins, "Federal Court of Appeals Ruling May Hurt Tax Competition, State Tax Reform," Tax Foundation, Sep. 20, 2004

부시 행정부는 현재 치열하게 논란중인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이외에도 2001~2003년 사이에 제정된 한시적인 감세규정을 영구화하고, 세법을 간소화하며, 저축 투자 관련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마지막으로 주택보유와 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산세상의 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정하였다. 재산세 감면은 주로 지역 내 사업시설 이전, 확충 혹은 고용 증대나 낙후지역에서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부여되는데 항소심은 감면규정이 소정의 금전적 조건이나 기존의 자산 취득 이외의 추가적인 사업이나 고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역내투자는 보존하고 역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때 기업활동을 역내와 역외거래로 분할하는 방식에서 임금과 자산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신 판매요건을 강화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또한 지방정부가 조세감면보다는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V. 2005년도 부시 행정부 조세정책 방향¹¹⁾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세입 제안서를 보면 향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현재 치열하게 논란중인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이외에도 2001~2003년 사이에 제정된 한시적인 감세규정을 영구화하고, 세법을 간소화하며, 저축 투자 관련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마지막으로 주택보유와 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1. 조세감면과 저축지원

연방재정의 25%를 차지하는 사회보장세의 개혁에서 아직까지는 사회보장세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나 2019년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의 상승, 인구증대의 감소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여 수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약 10조 달러의 지급 의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보장세를 개편하고 특히 약 1/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납세자가 관리하는 자발적인 은퇴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1~2003년 사이에 제정된 한시적 조세감면법 EGTRRA와 JGTRRA를 영구화하고 유산세의 폐지 이외에 양도·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도 영구화한다.

또한 연금형 비과세 저축의 개편 내지는 확대를 위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퇴직, 교육 그리고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다양한 저축형 플랜들이 자격, 기여 한도, 인출 등에서 매

11) "General Explanation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06 Revenue Proposals," Department of Treasury, Feb. 2005

우 복잡다기한 과세상의 대우를 받고 있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3가지 유형의 개인은퇴연금(IRA)을 은퇴저축계좌(Retirement Saving Account, RSA)로 통합하여 납세자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년 5천달러를 한도로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여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RSA에 누적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58세 이후 RSA로부터 인출하면 비과세한다.

또한 은퇴, 교육, 의료비 혹은 비상시에 대비한 저축 등 지출 목적과 관계없는 생활저축계좌(Life Saving Account, LSA)를 허용하여 납세자가 매년 5천달러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RSA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비과세하는데 나이와 용도와 관계없이 인출시 비과세한다.

내국세법 401조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다양한 은퇴연금을 하나의 기금(Employer based Saving Account, EBSA)으로 통합하고 간소화된 401(k) 플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단순화된 규정의 적용으로 현재 25% 이하인 중소기업의 연금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를 확대한다. 1998년 자산독립법(the Asset for Independence Act)에 의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받는 납세자는 개인개발계좌(IDA)에 가입, 매년 2천달러 이하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저축을 하고 그 대신 주정부나 비영리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동 계좌에서 인

출된 자금은 가입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교육비용 혹은 사업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저축과 자산보유를 지원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제안에 의하면 조정된 총소득(AGI)이 2만달러 이하인 개인(부부의 경우 4만달러)은 IDA에 가입할 수 있고 후원단체는 연 5백달러까지 달러 대 달러로 해당계좌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때 가입자의 저축은 과세하는 대신 후원단체의 기여금은 비과세되며 납세자가 61세가 되면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한편 4,500만명에 이르는 의료보험 비가입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90%의 보험료를 세액공제(성인은 최대 1인당 1천달러, 자녀는 5백달러)하는 건강보험 세액공제(HITC)를 제안하고 있다. 공제비율은 소득에 따라 50%까지 점차 감소하고 조정된 소득이 3만달러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불허한다. 단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공제금액이 큰 의료보험(Health Saving Account)에 가입하여 따로 의료비를 저축하는 납세자는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게 하고 또한 HSA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족당 연 5백달러까지 세액을 환급해 준다.

2. 사회정책적 목적의 개편

우선 기부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은퇴연금에서 기부단체로 직접 지급되는 기부금은 지금 처럼 공제하는 대신 납세자의 과세소득에서 직접 제외한다. 또한 연방소득세에서 면세되는 민간 자선단체의 경우 순투자소득에 대하여 2%로 저

저소득층의 주택보유 기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이 주변 가구소득의 80% 이하인 가구가 입주하는 신규 혹은 재개발 주택을 건립하는 개발업자에게는 현재가치로 공급가액의 50%까지 10년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single family housing tax credit). 이 제도는 지방정부 주택신용조합이 운영하며 저소득층이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을 과세되고 당해연도 기부금이 지난 5년간 평균 기부금 보다 많으면 사용세(excise tax) 1%를 감면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1%로 인하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택보유 기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이 주변 가구소득의 80% 이하인 가구가 입주하는 신규 혹은 재개발 주택을 건립하는 개발업자에게는 현재가치로 공급가액의 50%까지 10년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single family housing tax credit). 이 제도는 지방정부 주택신용조합이 운영하며 저소득층이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세제개편에서는 환경복구 비용을 한시적으로 감가상각하는 대신 비용을 지출한 연도에 즉시 공제하는 규정을 영구화한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기관 등의 단체에게 판매된 토지 등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만 과세한다. 또한 2008년까지 풍력과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1킬로와트/시간당 1.8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영업용뿐만 아니라 거주용으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납세자에게는 그 비용의 15%(최대 2천달러)를 2008년까지 세액공제한다.

휘발유 소비를 줄이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2004~2009년 사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

입한 납세자에게는 연료절약 규모와 재충전 규모에 따라 비용의 250~4,000달러까지 세액공제한다. 또한 2004~2013년 사이에 구입한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연료절약 규모에 따라 1천~8천달러까지 세액공제한다. 이 외에 5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하는 기계(CHP)에 대하여 1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한편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과세 채권을 2006년까지 연장 발행한다.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 시설이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연간 4억달러에 상당한 채권(QZABs)에 대한 비과세를 2006년까지 연장하되, 금융기관만이 동 채권을 보유할 수 있고 민간 자선단체가 채권금액의 10% 이상을 자산 혹은 서비스로 기부하여야 자격이 성립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이나 재개발지역 주민의 고용을 위하여 opportunity zone을 확립하여 이 지역에 이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40개 지역이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40개 지역을 추가로 opportunity zone으로 선정하여 2006~2015년 사이에 다음의 조세감면을 시행한다: ① 연간 수입이 5백만달러 이하인 업체의 과세소득 중 25%를 면세 ② sec. 179(중소기업의) 자산 매입시 10만달러까지 즉시 공제 ③ 상

업용 건물을 개발하는 납세자의 경우 1천만달러를 한도로 그 비용을 감가상각하는 대신 즉시 비용공제 ④ 낙후지역에 거주 및 일하는 납세자에게 근로복지 세액공제 제공 ⑤ 기타 다양한 연방 지원제도를 우선 적용.

3. 과세상의 허점(tax loophole) 개선

이중과세 방지 이외에 과세 기피를 위하여 외국 세액 공제제도를 남용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sec. 901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 주식을 배분할 때 두 회사 모두 실질적인 거래 혹은 사업활동을 하면 과세목적상 양도차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sec. 355 spin off and split off transaction). 그런데 피지배회사 자산이 실질적으로 투자자산인 경우 이를 현금상환으로 보아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납세를 기피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배당 당시 최소한 50% 이상의 자산이 실질적인 거래활동에 사용되고 있어야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세 번째로 환경보존을 조건으로 기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자선단체가 환경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당해 자산을 이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기업이 기업 관련자(related party)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그러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비용공제를 할 수 없다(sec. 163(j): disqualified interest). 또한 기업의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관련자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고 이러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비용공제

를 받을 수 없다. 즉, 해당 기업의 부채-자산비율이 1.5를 초과하고 이자비용이 조정된 과세소득의 50%를 넘으면 초과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외국 관련자의 채무를 통하여 미국 국내소득에 대하여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sec. 163(j) 조항을 강화하여 1.5의 부채-자산비율을 삭제하고 50% 규정도 25%로 조정한다.

자녀 등 미래 세대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 소득세와 증여세 및 세대생략세를 면세받고 이를 은퇴 후 사용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sec. 529의 기금 사용용도를 강화한다. 특히 기금 기여자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이외 10%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외 사전에 명시된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수혜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도 학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소득세와 10% 추가 과세한다. 또한 기금의 최초 수혜자가 아닌 수혜자에게 5만달러 이상의 자금이 학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급되면 5만달러를 초과한 처음의 10만달러까지는 35%, 15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에는 50%를 사용세(excise taxes)로 과세한다.

4. 과세행정제도 개선

1998년에 도입된 IRS 구조혁신법(RRA)은 내국세입청 직원이 파면될 사유가 되는 직무위반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파면을 포함한 처벌조항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직원에게 공지한다(Sec. 1203). 다만 세금 환급을 지체하는 경우나 직원 사이의 임무위반에 대한 논란은 법보다는 기존의 내부규정으로 처벌

자녀 등 미래 세대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 소득세와 증여세 및 세대생략세를 면세받고 이를 은퇴 후 사용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sec. 529의 기금 사용용도를 강화한다. 특히 기금 기여자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이외 10%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외 사전에 명시된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하고 그 대신 납세신고서나 관련자료를 허가 없이 보는 경우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한다.

한편 세금신고가 정확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한 자료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과세행정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는 의도로 세금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기존의 5백달러 과태료가 아닌 5천달러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터무니 없는 논리로 분할납부 혹은 과세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국세입청의 항소청구에서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징세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납세자는 국세심판소나 지방법원에 사법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Collection Due Process). 현재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나 유산세 등 결손세액에 해당하는 심의는 국세심판소에서, 고용세나 소비세 등의 결손과 관련이 없는 세금의 심의는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IRS 항소청구 절차의 심의는 국세심판원에서만 담당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또한 벌금을 포함한 총 납세의무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조정 경우 법률 고문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sec. 7122, offer in compromise). 보다 탄력적인 법 운영을 위하여 2005년 이후에는

이러한 금액제한을 없애고 재무부 장관이 법률 고문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

현재 개인과 기금을 제외한 주식회사 등의 사업자의 경우 연간 250개 이상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체는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의회가 지정한 대로 납세신고의 80% 이상을 전자신고하도록 하려면 250개 신고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타 연방 사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은닉수사로 얻은 수입금은 내국세입청이 그러한 활동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2005년이 아닌 2010년까지 연장한다.

5. 기타

현재 민간 채권으로부터 얻은 이자 소득은 일부 시설채권을 제외하면 과세한다. 그러나 공항, 대중교통, 수로, 에너지 관련 시설, 일부 임대주택 건설, 교육, 환경보전 시설 등의 건설에 쓰여진 시설채권은 비과세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주인구 1인당 75달러 혹은 총금액 2억 2,500만달러로 제한되어 있다(US Code title 23). 앞으로는 민간 자본에 의한 고속도로와 운송수단 교체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가로 면세 조항을

도입하여 총 150억달러에 상당한 채권에 대한 부과세를 추진한다.

두 번째로 고속도로, 항공, 수상교통 등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여타 액체연료에 부과되는 갤런당 0.1센트의 토지 정화세(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Fund Tax)는 원래 2005년까지 부과되기로 되었으나 지하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된 석유 등을 정화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연장 부과한다. 또한 광부와 그 가족의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Black Lung Disability Trust Fund)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지하탄광에서 채굴된 석탄 1톤당 1.1달러, 지상에서 채굴된 석탄에는 톤당 0.55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므로 2013년 기한을 연장하여 일반재정에서 빌려온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현재 수준의 세금을 유지하고 연후에는 세금을 각각 톤당 0.5달러, 0.25달러로 인하하되, 세금이 석탄가격의 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V. 세법 간소화를 위한 조세개혁

1. 연방세 개혁을 위한 자문패널의 설치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부시 2기 행정부는 지난 1월 조세개혁을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령으로 9명의 중립적인 패널을 지명, 간소하고 공정하며 성장 친화적인 근본적인 조세법 개정을 명령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의 조세법이 복잡다기하고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금신고를 위하여 미국 국민이 약 60억시간을 소요하며 그 비

용이 1천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1954년 제정 이후 약 32번에 이르는 중요한 세법 개정으로, 특히 1960년과 1986년의 조세개혁법으로 내국세법이 복잡다기해졌고 1986년 조세개혁법은 대체최소세, 재고의 자본화 그리고 외국세 관련 조항 등을 도입한 바 있다. Tax Foundation에 의하면 1954년 이후 소득세법의 자구가 약 17만 2천자에서 98만 2천자로 약 470% 증대하였고, 법령은 57만 2천자에서 594만 7천자로 약 940%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납세순응비용을 추정해 보면 소득세 납부를 위한 비용으로만 1999년을 기준으로 43억시간, 금액으로는 1,250억달러를 사용하고 있고 세금 1달러당 12센트의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법령의 복잡성은 상기한 바 납세순응비용 이외에도 개인과 기업에게 사업 혹은 투자계획의 변경 등 절세를 위한 노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증대를 의미하며, 복잡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세법으로 인하여 개인과 기업은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문패널은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내국세법을 간소화하되, 재정 중립적 조세개혁을 지향하며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그러나 동시에 공정하고 자가주택 보유와 기부문화를 지원하는 조세법 개혁 초안을 2005년 7월 31일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후 재무부 장관 등은 패널이 제시한 기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자문패널은 과거의 개혁법안을 바탕으로 일련의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준비중이다.

자문패널은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내국세법을 간소화하되, 재정 중립적 조세개혁을 지향하며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그러나 동시에 공정하고 자가주택 보유와 기부문화를 지원하는 조세법 개혁 초안을 2005년 7월 31일 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후 재무부 장관 등은 패널이 제시한 기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납세자 보호관(Tax Advocate Service)의 의회 보고서¹²⁾

내국세법 7803(c)(2)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National tax Advocate)은 세금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고충을 도울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 독립적으로 직접 보고한다¹³⁾. 특히 동 보고서에는 매년 조세정책과 과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정리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¹⁴⁾. 실제로 108기 의회에서는 동일한 자녀의 정의 사용 등 4개 부문에서 법령화한 바 있고 의회보고서에서 조세법령의 간소화와 납세자 권리신장을 주요 이슈로 제기한 바 있다.

조세개혁의 자문패널이 어차피 기존의 법안에 근거하여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면 납세자 보호관이 2004년에 약 800쪽에 걸쳐 의회에 제출한 개혁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

선 조세의 간소화 부문에서는 대체최소세(AMT)의 폐지가 제기되고 있다. 원래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9년 처음 도입된 대체최소세가 점차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2010년에는 약 3,500만명의 납세자가 대체최소세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⁵⁾.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은 의회에 대체최소세가 납세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을 지적하면서 개인 소득에 적용되는 대체최소세의 폐지 내지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 개편을 권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납세자 보호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상의 심각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가 의료보험비를 고용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창업한 기업이 S 주식회사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세금신고 기한까지로 연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급여 관련 세금을 내국세입청의 납부기금에 제때 기탁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벌금을 낮추고 부

12) "Tax Advocate Service 2004 Annual Report to Congress," Tax Advocate Service IRS

13) 2004년의 경우 납세자 보호관 서비스에 약 7만 4천건의 상담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이 가운데 세무조사 3,472건, 범칙조사가 6,469건 등을 차지한다.

14) 한 예로 기존의 조세행정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납세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납세자권리 영향보고서(taxpayer right impact statement)를 발표한다.

15) 대체최소세가 도입된 1969년 당시 3만달러 이하의 소득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현재 금액으로 추정하면 약 15만 3천달러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시법이 아니면 아직 4만 5천달러 이상 소득은 대체최소세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부가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파트너십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면제하여야 한다.

한편 최소한 10개의 다른 규정에 명기된 교육비 관련 감면조항에서 대상요건과 소득범위 그리고 정의 등이 서로 달라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비 감면규정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납세자 보호관은 관련법을 정비하고 간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은퇴를 대비한 개인은퇴연금 저축규정도 현재 법에서는 12개 조항 이상이 마련되어 있어 산만하고 적용대상, 금액, 인출요건 등이 복잡다기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권리 보호에서는 1998년 내국세입청 구조조정 혁신법 제정을 통하여 형평성, 정책적 고려 그리고 개별 납세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과세행정에 도움이 될 경우 내국세입청이 납세채무를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ETA offer). 그러나 내국세입청이 동 규정을 협의로 해석하여 동 규정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고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의회가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공정한 납세절차(Collection Due Process, CDP)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심리과정에서 잠재적 채무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법심리(*de novo judicial review*)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고지서 양식 등의 개선과 정확한 심리 기록 등 기술적 사안에서의 개선을 촉구한다.

한편 2007년까지 모든 세금신고의 80%가 전자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98년 의회가 내

국세입청에게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이를 위하여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어 2002년 내국세입청이 최소 60%의 납세자에게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를 모든 납세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국세입청에 따르면 과세되었지만 징수되지 않은 세금(tax gap)이 2001년의 경우 약 2,5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1억 2,80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가 이러한 세금회피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1인당 약 2천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고 있다. 2003년 의회 청문회에서 모든 증언이 현금거래와 입증 불가능한 소득으로 인하여 이러한 지하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납세자 보호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납세기회를 줄이고 징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자영업자의 세금납부를 위한 전자신고, 소액징수(1099-MIS) 강화와 서비스업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세입청과 지방정부 징세관청 사이의 정보교류 그리고 이들 기관 사이에 지하경제 활동을 포착하기 위한 지역별 협력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다.

VI. 결론

일부 연구¹⁶⁾에 의하면 약 78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납세자가 2001년 이후 일련의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¹⁷⁾. 대략 40%의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 이유는 자녀세

16) S. Hodge and J. Moody, *Bush Tax Cuts Erased Income Tax Burden for 7.8 Millions Families*, Tax Foundation, August 17, 2004.

CBO 연구에 의하면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은 감세가 아닌 정부지출의 증대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 정부가 공언한 바와 같이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금인상보다는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절실하며 특히 이라크 전쟁 등의 대외 확장적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역공제와 저소득 세율구간의 확대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때문이다. 즉, 세율 10% 과세구간의 도입과 자녀세액 공제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 납세자 가운데 90%는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이며 나머지 9.3%가 5만~10만달러이다. 한편 소득계층 연령층으로 보면 자녀세액 공제로 나이가 35~44세에 이르는 계층 가운데 36.5%가 그리고 25~34세 계층 가운데는 25.9%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2001~2004년 사이에 5번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금을 감면해 준 바 있다. 특히 이러한 감면은 한시적 감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영구적 세금감면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감세할 경우에 미국 내에서 재정부담의 발생 그리고 역진적인 경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1년 당시 CBO는 2002~2011년 사이에 재정흑자를 약 5.6조달러로 추정할 바 있으나 일련의 상황 변화로 2004년에는 CBO가 같은 시기에 3조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재정적자는 GDP의 4.5%로 과거 40년 평균인 2.3%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여 GDP의 1.5%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일련의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있는데 CBO 연구에 의하면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은 감세가 아닌 정부지출의 증대로 발생하고 있다. 즉, 2005년에 예상되는 적자는 약 3,680억달러에 이르는데 2001~2005년 사이에 정부 수입은 1.99조달러에서 2.06조달러로 약 660억달러(3.3%)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정부지출은 같은 기간에 1.86조달러에서 2.43조달러로 약 5,620억달러, 무려 30.2% 증가하였다¹⁸⁾. 따라서 부시 정부가 공언한 바와 같이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금인상보다는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절실하며 특히 이라크 전쟁 등의 대외 확장적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KIPF**

17) S. Hodge and J. Moody, *Bush Tax Cuts Erased Income Tax Burden for 7.8 Millions Families*, Tax Foundation, August 17, 2004.

18) William G. Gale and Peter R. Orszag, *Bush administration Tax Policy: Summary and Outlook*, Tax Notes, Nov. 29, 2004.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j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미국, 자산부풀리기로 매년 290억달러 세수손실

- 자산가치 부풀리기로 인해 미국 정부가 손해 보는 세수입이 최소한 290억달러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
- 플로리다 대학의 조셉 M. 도지 교수와 법률가 겸 루체스 대학 교수인 제이 솔레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 부동산 소유자가 주식과 기업자산, 부동산 등 자산가치를 부풀려 해마다 최소한 290억달러 탈세
-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의 조세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정부는 2,500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두 교수는 주장
- 특히 주식에서 이 같은 자산 부풀리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솔레드 교수는 보고서에서 밝힌 탈세규모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집계된 것이며, 개인적으로 2010년까지 3,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피력

- 문제는 미국 국세청이 매각된 자산의 실제 구입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음
- 임금 노동자의 경우 경영자가 임금을 국세청에 보고하며, 은행은 각 개인이 세금공제 가능한 모기지 이자를 얼마나 지불했는지를 보고해야 하며, 임금 노동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와 집주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눈속임이 일어난다는 지적
- 문제를 지적한 두 교수는 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매수가격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자산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 이들은 또 부시 행정부가 장기 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의 상한선을 1997년 28%에서 현행 15%로 낮춘 이후 불법 탈세가 더 늘었다고 지적
- 통상 세금이 낮으면 조세회피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부당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
- 이들은 자산거래 가격의 기록 등을 포함한 기존 시스템의 개혁만으로 세금인상 없이 재정적자를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할

<머니투데이 1/24>

미국-유럽, 법인세 인하 '전쟁'...외국인투자 유치하라

- 미국과 유럽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치열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내리자 미국 정부도 세금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
-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물류 통신망을 포함한 기간시설과 정치적 안정 등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각국간 이들 환경이 엇비슷해지면서 친기업적 세금정책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결정하고 있음
 - 아일랜드 정부는 5년 전 24%였던 법인세율을 지금은 12.5%까지 내림
 - 오스트리아(25%) 포르투갈(27.5%) 등도 5년 전과 비교해 10~12%p씩 법인세율을 인하
 - 기업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독일 역시 5년 전 56%였던 법인세율을 지금은 8.3%로 대폭 인하
 - 실제로 최근 미국 기업들 중에는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 공장이나 서비스센터 등을 유럽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남
 - 자동차 부품업체인 델파이는 최근 2~3년에 걸쳐 생산 시설의 절반 이상을 법인세율이 낮은 폴란드(19%)로 이전했음
 - 올 초 ‘휴렛팩커드’, ‘아마존’ 등은 세계상 장점 때문에 아일랜드로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을 옮겼고, ‘e베이’도 세금이 낮은 스위스에 지역본부를 설립
- 이에 대해 미국도 적극적인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맛볼’을 놓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창출법’을 제정, 기

업들이 해외자본을 미국 내에 반입할 경우 감세혜택을 대폭 확대기로 함

-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자리창출법에 따른 법인세 우대 정책으로 향후 수개월간 1천억달러 상당의 외화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FT에 따르면 지난주 ‘존슨앤드존슨’, ‘엘리릴리’, ‘세링플로’, ‘브리스톨마이어스’ 등 다국적 제약사들은 해외자본을 미국 내에 반입할 경우 기존의 20~25%의 세율 대신 5.25%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감세혜택을 활용, 모두 374억달러를 반입키로 결정
- ‘화이자’도 해외자산 376억달러를 미국으로 반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 밝힘
- JP모건은 “미국 기업들이 세금전략에 따라 해외은행 예금계좌에 쌓아두고 있는 자본은 약 7천억달러”이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일자리창출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 미국 내로 재유입될 것”이라고 전망

〈한국경제신문 1/31〉

일본, 해외자금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

- 일본 재무성이 해외 대형 투자자금들의 국내 자본이득에 대해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
- 신문은 해외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세금인상시 일본 내 자금유입을 축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재무성은 세금회피와 탈루를 막기 위해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함
- 현재 해외자금들은 일본 내 자본소득에 대해 일부 세금을 물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극히 미미한 상황임
- 올 들어 일부 정치인들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로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세
금 개혁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자본 유입이 둔화되며 일본 주식시장에 부정
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연합인포맥스 2/11〉

홍콩, 출산율 0.8명... 셋 낳으면 감세

“3명 이상씩 아기를 낳아야 홍콩이 산다.”

□ 홍콩 정부가 사상 초유의 출산율 저하 사태에 직면해 비
상대책 마련에 착수

□ 도널드 창(曾蔭權) 홍콩 정무사장(국무총리 격)은 21
일 “노인인구 급증과 전반적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3명 이상 낳기를 당부한다”며 “3
명 이상 낳은 부부들에 대해 세금감면 같은 인센티브 정
책을 내놓겠다”고 밝힘

○ 그는 또 “지금 추세라면 오는 2031년에는 전체 인구
의 4분의 1 이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고, 여성
100명당 남성은 70명에 불과해 여초(女超) 현상이 심
화될 것”이라며 “가급적 셋째는 아들을 낳는 게 바람
직하다”고 강조

○ 헨리 탕(唐英年) 재정사장(부총리 격)도 “아기를 많
이 낳는 부부들에게 세금감면 등 각종 우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1973년 2.76명이던 홍콩의 가임(可妊)여성 출산율은
지난해 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전문가들은 정부의 우대책 외에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와 독신녀 증가 현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조선일보 2/23〉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율 인하키로

– 최고 한계세율 22%서 내년 21%, 내후년 20%로
– 한국 실효 개인소득세율 싱가포르보다 낮아

□ 싱가포르 정부는 32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에 대해 적용되는 현행 최고 한계세율 22%를 2006년
회계연도분 소득에 대해서는 21%, 2007년 회계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20%로 인하할 예정이며 아울러 그 이
하 소득구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율로 각각 감세할 계
획이라고 발표

〈개인소득세율 인하 스케줄〉

Annex A-Schedule of Personal Income Tax Rates for
YA2006 and YA2007

(단위 : 싱가포르달러)

과세대상 소득 구간 Chargeable Income band	현행 한계세율 Current marginal tax rates	2006년도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s for YA2006	2007년도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s for YA2007
\$0 - \$20,000	0.00%	0.00%	0.00%
\$20,001 - \$30,000	4.00%	3.75%	3.50%
\$30,001 - \$40,000	6.00%	5.75%	5.50%
\$40,001 - \$80,000	9.00%	8.75%	8.50%
\$80,001 - \$160,000	15.00%	14.50%	14.00%
\$160,001 - \$320,000	19.00%	18.00%	17.00%
> \$320,000	22.00%	21.00%	20.00%

주: 예를 들어 연간 개인소득이 \$50,000인 경우, 현행 소득세율 기준 납
부해야 할 세금은 \$20,000 x 0% + \$10,000 x 4% + \$10,000 x 6%
+ \$10,000 x 9% 와 같이 계산되어 총 \$1,900이 된다.

자료: <http://www.channelnewsasia.com/cna/sbudget/2005/highlights.htm>

○ 위와 같은 소득세 인하 계획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
인데, 현행 22% 최고 한계세율은 종전 26%에서
2002년도 정부예산계획을 통해 인하되었던 세율로서
이는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며, 비
거주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이와 다름

○ 개인소득세 납부자 입장에서의 감세효과는 싱가포르
정부 자료에 의하면 하위 25%에 속하는 소득계층은
평균 13%의 감세혜택을, 중간 50% 소득계층은 11%,

나머지 상위계층은 7%의 감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감세조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비즈니스 허브로서 싱가포르 매력도를 유지하고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싱가포르에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임
- 회계법인 KPMG의 실질적 개인소득세율 비교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가정이 있지만 (연간 개인소득 금액 미화 6만달러 가정 등) 2005년 소득분에 대한 세율이 싱가포르는 6.2%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낮은 5.0%로 되어 있어 싱가포르의 세율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자료가 최고 한계세율만을 내세워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싱가포르가 가장 낮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임

(KOTRA 경제무역정보 2/22)

재정 정책

중국, 20~40년내 미국 따라잡는다

- 중국 경제가 향후 20~40년내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 보고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미국 내 거시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향후 20~40년 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답변했다고 보도
 - 신문은 지난 25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조정 연평균 성장률이 3% 수준에 불과한 데 비해 중국은 지난해 9.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지난 25년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평균 성장률이 8% 이상을 유지해 미국을 따라잡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 신문은 실제로 지난달 거시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부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고 답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향후 20~40년 내 중국이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중국을 전공하는 도널드 스트라츠하임은 “미국 내 모든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단일요소가 무엇인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대부분은 분명 중국을 지목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변화의 시기는 15년 내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신문은 중국의 부상은 세계 기업과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뒤흔들 것이며, 현재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위안화는 향후 일본의 엔화와 유럽의 유로화처럼 활발하게 거래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이 경우 위안화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봄
 - 또 최근 15년중 상당기간 두 자릿수로 예상이 늘어났

던 중국 군대는 거대 경제의 지원에 힘입어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신문은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출현과 그 충격을 지난 19세기 독일과 20세기 미국의 출현과 견줄 만한 것으로 강조

□ 최근 출간된 『중국의 세기』의 저자인 센카 오테드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이제는 규모가 중요하다. 앞으로 20년 후 중국은 구매력 평가에서 1위가 될 것”이라고 말함

〈edaily 1/24〉

미국, 부시 연두교서 무슨 내용 담겼나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

□ 부시는 2일(현지 시간) 새해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점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빈곤층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북한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테러 집단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2009년까지 재정적자 절반 축소

-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230만개의 일자리를 늘렸고, 세금감면을 통해 침체를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고 발표

- 부시는 경제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경쟁력을 길러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부시는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150개 이상 폐지해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하고 2009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힘

-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사회보장제도 개혁 시급

- 부시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연금제도의 개혁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회에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세금혜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부시는 현재 4,500만명의 미국인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수 백만명의 퇴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함

- 부시는 지금부터 13년 후인 2018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대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까지 정부는 2,000억달러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2042년에는 재정이 완전히 파산할 위기라고 말함

-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는 55세 이하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절약저축제도(Thrift and Savings Plan)와 유사한 형태의 개인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개혁방안 및 기금을 주식과 채권에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

□ 테러 공격에 공격적 대처

- 부시는 중동의 평화와 이라크를 포함한 세계 민주화를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달 이라크 국민이 총선에서 보여 준 투표 열기는 자유에 대한 이들

- 그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
- 그는 이라크에 대한 무장세력의 공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테러집단의 공격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또한 이라크 국민이 자유를 위해 싸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
- 파병군 철수와 관련, 부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철군 시기를 밝힐 경우 무장세력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함
- 부시는 또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유럽 주요 국가와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임
- 부시는 한편 북한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란은 테러집단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군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
- 부시는 아시아 국가와 함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머니투데이 2/3〉

러시아, IMF채무 조기 상환

- 러시아 정부가 지난 1일자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려다 쓴 채무를 전부 상환
- 러시아 정부는 지난 1992년 8월부터 1999년까지 9차례에 걸쳐 IMF로부터 총 153억달러의 외채를 도입했는데 1일 이 중 남아있던 33억 3천만달러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IMF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남
- 1일 지불한 금액은 당초 오는 2008년까지 상환 예정이었지만 3년을 앞당김으로써 러시아 당국은 2억 400만달러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러시아 정부가 조기 상환할 수 있었던 원인은 고유가로 인해 외환 보유액이 1천억달러가 넘는 등 현금 유

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임

- 러시아 금융부는 해당 재원을 7천400억루블(264억 달러) 규모의 ‘안정화기금’에서 마련했으며 안정화기금은 최근 석유수입에서 나오는 돈으로 만들어진 것임
- 하지만 현재 러시아 정부는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 클럽’과 450억달러의 채무상환 문제가 남아 있음
-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2일 러시아 정부가 조기 상환을 하는 대신 원리금 일부를 경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에누리 없이 정확한 금액을 갚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금융부 장관이 안정화기금을 외채의 조기 상환이나 연금 인상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채권단이 일부 탕감해 주지 않을 경우 안정화기금을 통한 조기 상환은 어렵다고 전망
- 러시아 당국은 현재 파리클럽을 포함해 세계은행 등에 모두 1천129억달러의 외채가 남아 있음

〈연합뉴스 2/2〉

일본 경제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

- 한동안 견고한 추세를 지속했던 일본 경제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
- 17일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04년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감소,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뒤인 2001년 2분기~2002년 1분기까지의 4분기 연속 이후 3년 만임
- 지난해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일본 GDP의 57%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전기 대비 0.3%p 줄어

든 것이 주요인

- 일본 정부는 태풍과 니가타 지진 등으로 여행 등의 소비가 억제되고 ‘따뜻한 겨울’로 겨울용품 판매가 둔화됐다고 설명
- 또 수입가격 증가로 인한 순수출(수출-수입) 감소도 성장률을 0.2%p 감소시켰음

□ 일본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조정기’로 해석하고 있음

- 다케나가 헤이조 재정금융상은 “전체적으로 회복기조에 있다는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다음 성장을 향한 1 단계로, 비판적인 재료는 없다”고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
- 이 같은 해석은 ▲4분기 민간투자가 전분기보다 0.7% 증가하는 등 설비투자가 견조하고 ▲개인소비가 줄었지만 명목 고용자 급여가 늘어나는 등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마이너스 성장이라 하더라도 그 폭이 IT 거품붕괴 뒤(마이너스 1.8~4%)에 비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의 조정기를 거친 뒤 ‘기업투자 증가→업적 회복→소득증가→소비창출’ 등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해석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이 향후 시장 불투명으로 이익 예상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는 데다 개인소비 위축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미국과 중국의 수요감소 등이 현실화되면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
- 시모나카 유지 UFJ종합연구소 조사부장은 “일본 경제의 양축인 내수와 수출 부문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본 경제의 정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라며 “정부는 ‘조정기’라고 말하지만 이미 후퇴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

〈경향신문 2/17〉

캐나다, 2005년 연방정부예산안 주요 내용

1. 개요

- 캐나다 정부는 2월 23일 2005/2006회계연도의 연방정부예산안을 발표
- 이번 정부예산안의 기본 골자는 향후 5년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C\$420억의 대규모 지출 계획임
- 이는 캐나다 정부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한 재정수지 흑자현상을 유지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수지 흑자현상이 시작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의 고용시장과 1인당 국민소득은 G7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2004년 캐나다 경제는 2.4%의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 지속되어 2005년에는 2.9%, 2006년에는 3.1%의 연간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한국과의 FTA 추진과 중국, 인도 및 브라질 등 이머징 마켓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교토협약에 대한 능동적 대처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2. 주요 분야별 내용

- 재정의 건설한 운영
-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을 하향조정하기 위해 C\$30억을 예치, 비상시를 대비한 준비금(contingency reserve)으로 예치

- 국가 차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C\$10억 이상을 예치

□ 경제성장의 지속추진

- 미래의 노동력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C\$50억을 지출해 유, 소아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탁아 시설을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제도 확립을 추구
-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정착, 복지 프로그램에 향후 5년간 C\$3억 9,000만 지출
- 직업훈련 개발 프로그램에 향후 3년간 C\$1억 2,500만 지출
- 근로세(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의 세율을 2006년부터 인하
- 정부산하의 연구기관 3곳 및 각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 등에 향후 5년간 C\$10억 지원,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
- 현재 C\$8000 선에 머물러 있는 세금공제소득 한계액을 2009년까지 C\$1만으로 인상, 86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면제 실시
- 기업체의 수익에 적용되는 누진부가세(surtax)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21%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19%로 인하, 캐나다의 제조업체들은 미국 업체에 비해 4.5% 정도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게 됨
- 휘발유세의 징수를 통해 형성되는 연방정부의 재정 일부를 지방자치정부와 공유, 향후 5년간 C\$50억을 지원 예정

□ 자연환경의 보존과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교토협약 대응)

- 향후 5년간 총 C\$50억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할 예정으로 이 중 대부분

이 환경부가 진행중인 교토협약의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Clean Fund와 Partnership Fund에 대규모 지출 예상

-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인 풍력자원 시설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
- 국민들과 기업들이 재활용가능하고 연료효율성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관련설비 마련에 투자된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대폭 인상
- 환경보존을 위해 향후 5년간 연간 C\$20억을 지역사회에 지원
- C\$3억을 Green Municipal Fund 에 지원, 지방자치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보존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

□ 의료 및 복지 향상

- 현재의 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C\$410억을 지출, 이에 따라 현재 C\$163억 수준인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현금지원이 2014년에는 C\$305억으로 증가할 전망
- 이외에도 추가로 C\$8억 1천만 지원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의 개발 및 투자지원(C\$7,500만), 보건제도 확충 및 고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지원(C\$3,000만), 의약품 안정성 강화를 위한 연구 지원(C\$1,700만) 예정
- 주(州)간 발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C\$330억 추가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강화
 - 2005년 7월을 기해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월별 지원금을 C\$2,000으로 인상
 - 장애인이나 위급환자의 부양가족들이 세금 납부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C\$1만까지 2배로 인상
- 원주민 복지제도 강화

- 2004년 제정된 의료법에 따라 C\$7억을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제도에 지출하고 있음
- 추가로 C\$7억 3,500만을 신규주택 건설과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자녀들을 위한 특별교육 등에 지출할 예정
- 노인 복지제도 강화
 - 향후 2년간 은퇴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C\$270억을 지출. 이에 따라 160만명의 은퇴한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

□ 해외시장 개척 및 대외외교 강화

- 현재 추진중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하여 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할 예정
- 중국, 인도, 브라질로 대표되는 이머징 마켓을 해외시장 개척의 핵심타겟 시장으로 선정, 적극적인 투자 및 마케팅 활동 대폭 강화
-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아태재단에 C\$5,000만을 지원
- 북미자유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 멕시코와의 보안, 경제, 감독 파트너십 강화
-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꾸준한 유대관계 촉진
- 이와 같은 대외외교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C\$4,200만을 외무성의 인력확대에 지원
- 캐나다의 과학기술을 해외에서 촉진시키기 위해 C\$2,000만 책정
- 향후 5년간 C\$34억을 해외에 추가지원.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난 지원, 최빈국에 대한 국가부채 삭감, AIDS나 말라리아, 결핵,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투자 지원

바. 국방력 증강

- 국방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C\$130억 현금 지원
 - 국방력 규모 확대: 정규군 5명, 예비군 3천명 추가 증원
 - 국방장비 및 군필수품을 대대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투자 예정
- 국가안보체제 강화
 - 국경 보안체제 강화를 포함한 국가안보를 위해 C\$10억 지출

〈KOTRA 경제무역정보 2/28〉



정책흐름

1. 재정경제부 2005 업무계획보고
2. 2월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
3.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계획
4. 국세청 업무현황보고 자료



재정경제부 2005 업무계획보고

※ 이 자료는 2005년 3월 3일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에서 발표한 「재정경제부 2005 업무계획 보고」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3일(목)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재정부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련 공무원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국정과제위원회 정부인사들이 참석했다.

* 참석자: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 정부혁신·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 이날 보고된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재정부 업무의 성과목표, 추진일정 구체적 제시

- 재정부 5대 정책목표와 16대 이행과제는 작년말 발표된 경제운용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부 업무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종합투자 계획 시행,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의 이행과제는 이미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과제로서 재정부 차원에

서 담당해야 할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고, 성과목표·추진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편, 중장기 세계개혁방안 마련,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반구축, 국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등의 이행과제는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재경부가 단위부처로서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 과제의 주요 추진방향·성과목표·추진일정 등을 제시하였다.

② 혁신성과의 제도화

- 참여정부 3년차 ‘혁신성과의 제도화’ 방침에 맞추어 이번 보고된 이행과제를 장관과 개별직원 간의 성과계약으로 전환하여, 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토록 하는 체제를 갖추면서도, 종합정책부서로서의 부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재정부 자체평가시스템의 주요특징은 업무 프로세스면에서
 -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통해 대책의 필요성을 적기에 인지토록 하고,
 - 세부대책의 설계전 실태조사를 원칙화하고, 실태조사 계획이 마련되면 대책 발표시기를 예고함으로써 대책

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 대책의 집행과정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또한,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의 충실도를 최종적인 결과평가와 함께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목표달성에 집착한 정책요류를 최소화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목표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민원프로세스, 인사시스템 혁신

- 재정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정책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혁신을 인사시스템 혁신과 함께 금년도 재정부의 주요 혁신과제로 제시하였다.
- 민원처리에 있어 「2-1-5-0」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 대표 번호를 「2110-2150」으로 통일하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신설하며,
- 민원이 많은 업무분야에 대해, 재경부가 보유한 자료·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홈페이지에 별도 이용코너를 개설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주요분야: 회계·국가계약 예규 유권해석, 세법해석, 국세심판 사례

※ 「2-1-5-0」민원처리시스템

- ▶ 현재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시행중인 2시간 내 답변체제(영문질의의 경우 1일 내 답변)의 기본 골격을 재정경제부 전체 업무영역으로 확대
- ▶ 모든 민원(정책질의, 유권해석 등 구체적 민원)에 대해
 - 접수 후 2시간 내 처리방향, 절차에 대해 1차 답변
 - 정책성 제안·문의, 유형화된 질의에 대해 1일 내 후속 답변
 -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5일 내 (법정민원처리기한 7일) 후속답변
 - 민원접수·처리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0)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

- ▶ 이를 통해 민원인별 맞춤형·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해당정책의 대국민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2시간 답변체제(사이버신문고)의 운영결과 민원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답변자들의 민원회신자세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3. 16대 이행과제 중 주요과제의 주요내용과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 ① 종합투자계획 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3월초 국무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 아래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단장: 재경부차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기에 타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②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물류·회계·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문화·관광·레저 서비스 산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토대로 업종별 개방전략까지 수립한다는 계획 아래 총리주재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산하에 실무추진단(단장: 재경부 차관보)과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운영토록 할 것이다.
- ③ 작년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금년중 매듭짓기 위해 특히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1/4분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④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으로서는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조치를 추진하면서, 비투기적인 주택수요에 맞추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⑤ 세목 신설, 세율인상 없이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수기반을 넓히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세제의 선진화를 위해 금년중 중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입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⑥ 금융산업은 독자적인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목표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증권·보험·서민금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⑦ 물류·금융 등 동북아 허브지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불 투자 유치, 외국학교·병원 각 1~2개를 유치한다는 가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한국투자공사(KIC)의 상반기 내 출범 등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49개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할 것이다.

⑧ 국유재산관리제도를 민간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유 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한 3개년 전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차년도인 금년에 25%를 완료토록 하며, 국유지 관리체계를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 중심으로 전환토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민간경영 마인드 정착이 절실한바, 우선 재경부부터 실무책임자인 국유재산과장을 민간 공모할 계획이다.

〈5대 정책목표와 16대 이행과제〉

◆ 투자·소비 활성화

1.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2. 종합투자계획 시행 등 민간주도의 투자 활성화
3.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충과 벤처 기업 활성화
4.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5.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6.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

◆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7.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 마련
8. 조세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9. 세원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보호

◆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자금흐름의 선순환 기반 구축

10.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
11.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산업 균형발전 추진

◆ 선진형 통상국가 기반 구축

12. 대외개방 촉진과 대외협력 강화
13. 플랜트 등 시스템 수출지향 해외진출 지원
14. 물류·금융 등 동북아 허브지향 인프라 구축

◆ 재정과 국유재산 관리 혁신

15.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반 구축
16.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2월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

※ 이 자료는 2005년 3월 14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월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05. 1월에 이어 2월에도 소비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05. 2월 소비관련 55개 업종 사용액 전년대비 7% 증가
 -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대비 8.5% 증가

- ◇ '05. 1~2월 누계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대비 증가
 - 소비관련 55개 업종 사용액 : 전년대비 10% 증가
 -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 전년 대비 11.7% 증가
 - * 설연휴('04. 1, '05. 2)에 따른 소비성향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1월 및 2월을 합산한 추세를 분석
 - ※ 신용카드 지출액 : 민간소비지출액 중 약 44% 차지('03년)
 - 서비스업 활동지수 및 소매판매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分析〉

- '05. 2월 소비관련 55개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7% 증가(8.6조원 → 9.2조원)
 - 설날연휴 특성을 반영하여 할인점(58.6%), 백화점(6%), 여행(28%) 및 미용(23%)업종의 카드사용량 급증
 - 유희주점(△13%), 숙박(△10%), 안마시술소(△8%),

화장품(△12%) 등은 전년보다 감소

- '05. 1~2월 누계 사용액도 전년보다 증가하여 소비회복 추세가 정착되고 있음
 - 소비관련 55개 업종 사용액: 전년 1~2월 대비 10% 증가 - 17.4조원('04년 1~2월) ⇒ 19.2조원('05년 1~2월)
 -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 전년 1~2월 대비 11.7% 증가 - 25.2조원('04년 1~2월) ⇒ 28.1조원('05년 1~2월)
- '05. 2월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대비 8.5% 증가
 - 다만, 예년보다 길었던 설날연휴 등으로 2월 전체 사용액은 1월 대비 8.2% 감소
 - 12.4조원('04. 2월) → 14.7조원('05. 1월) → 13.5조원('05. 2월)

□ 업종별 분석('05. 1~2월 누계 사용액 기준)

- 호황업종(20%초과) : 여행, 할인점, 학원
- 회복업종(20%이하) : 숙박, 백화점, 가전, 주유소, 의료, 유희주점, 의료, 이용
- 불황업종(감소업종) : 인터넷상거래, PG가맹점, 화장품 등

〈참고〉 업종별 카드이용 실적

(단위: 천억원 (전년동기 대비))

구 분	'04. 1	'04. 2	'04. 1~2	'05. 1	'05. 2	'05. 1~2
유 통	30.9	26.1	57.0	30.6 (△1%)	29.4 (+12%)	60.0 (+5%)
(백화점)	9.0	7.6	16.6	9.3 (+3%)	8.1 (+6%)	17.4 (+4%)
(할인점)	4.5	3.7	8.2	5.5 (+22%)	5.8 (+58.6%)	11.3 (+37%)
(수퍼마켓)	6.4	5.2	11.6	6.2 (△3%)	6.3 (+21%)	12.5 (+7%)
음 식	17.5	19.5	37.0	21.9 (+25%)	18.6 (△5%)	40.5 (+9%)
(유흥주점)	4.3	4.6	8.9	4.8 (+12%)	4.0 (△13%)	8.9 (0%)
여 행	3.9	3.2	7.1	5.1 (+31%)	4.1 (+28%)	9.2 (+29%)
숙 박	2.0	2.0	4.0	2.2 (+10%)	1.8 (△10%)	4.0 (0%)
오 락	1.7	2.1	3.8	2.1 (+23%)	2.0 (△5%)	4.1 (+8%)
의 료	6.9	7.3	14.2	8.8 (+27%)	7.8 (+7%)	16.6 (+17%)
주유소	11.2	10.7	21.9	13.0 (+16%)	12.2 (+14%)	25.2 (+15%)
가 전	2.4	2.6	5.0	2.5 (+4%)	2.8 (+8%)	5.3 (+6%)
학 원	2.0	2.3	4.3	2.7 (+35%)	2.6 (+13%)	5.3 (+23%)
이 · 미용	0.6	0.6	1.2	0.7 (+17%)	0.7 (+17%)	1.4 (+17%)
소비관련 55개 업종	88.4	86.2	174.6	100.3 (+13%)	92.1 (+7%)	192.4 (+10%)
총결제액	128.0	124.3	252.3	146.9 (+15%)	134.9 (+8.5%)	281.9 (+11.7%)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 추진상황 및 투자계획(안)

※ 이 자료는 2005년 3월 8일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에서 발표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예산처 장관은 3.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의 투자계획(안)에 대해 보고
 - 이밖에 보고된 투자계획(안)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난 2월초까지 요구된 사업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향후 자치단체 추가 수요 등을 보완하여 금년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

- '05년도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
 - ①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딘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계속사업 위주 선정)
 - ② 금년중 착공하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 ③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편익증진,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

-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철도 등 15개 사업에 대해 3년간 23조 원 수준
 - '05년중에는 6조원 수준의 BTL사업 협약체결 가능

(단위: 조원)

사업 유형	'05년 협약규모	'05~'07년 합계
합 계	6.0	23.4
1. 교육시설	3.5	13.6
2. 환경시설	1.0	5.6
3. 군 주거시설	0.7	1.8
4. 문화·복지시설	0.4	1.2
5. 일반철도	0.4	1.2

- 중앙부처 및 교육청 사업은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자치단체 사업은 BTL에 대한 이해부족,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부진
 - 자치단체 사업은 3년간 전체 6.8조원 중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82%로 대부분이고, 당초 기대했던 사회복지시설 등은 저조
- 정부는 BTL방식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민자유치사업을 일시적 경기대책이 아닌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장기 Project로 관리할 방침
 -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Up-grade하기 위해 시설별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여 투자

- BTL방식 도입을 계기로 재정운용방식을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

□ 정부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①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시·군·구청장 설명회 개최 (3. 11일), 홈페이지 개설, BTL사업 시행지침서 등 제공
- ② 부지확보 문제는 교육·복지·문화시설의 복합시설화를 장려하여 대처
 -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현재보다 10% 추가하는 방안 추진

③ 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3월중에도 계속 발굴

- 투자계획(안)의 사업별 한도 내에서 민간 사업자의 신청, 협약체결 결과 등에 따라 실제 투자규모가 결정될 예정

□ 향후 일정은

- 3월 중순 연기금, 금융기관, 투자회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 4월 기본계획 고시 → 5~6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토지 확보, 설계완료 등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은 하반기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1. 그동안 추진상황

(1) BTL사업 추진체계 구축

□ 범부처 BTL사업추진 T/F(팀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구성·운영

- BTL 정책 종합조정 및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
- 13개 부처 담당국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으로 구성

□ 제도지원반을 가동

- BTL제도가 공무원들에게 생소한 만큼 기술적 Consulting 및 교육 제공
 - 타당성 분석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기본 틀, 표준협약안, BTL사업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개발원·국방연구원 등 출연연 기관, 금융·회계·건축분야 등의 민간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20명)

□ 기획예산처에 실무 T/F(팀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구성·운영

- 제도운영 주무부처로서 대상사업 선정, 투자계획 수립, 커뮤니케이션 등 실무 총괄
 - 'BTL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 지자체 등에 제공
 - 사업 추진상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2) 대상사업 선정

부처 및 지자체 이해 제고

□ 범부처 BTL사업추진 T/F회의 3회 개최

- BTL사업 추진방식 설명 및 부처 애로사항 점검
- 대상사업 선정 및 투자규모 협의

□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 노력

- 1. 24일 자치단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 1. 26일 시도 부지사 회의를 통해 설명
- 3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 2. 18 호남총청권, 2. 21일 대구영남권, 2. 23일 중부권
- PICKO주관으로 자치단체 방문 설명회

요구현황 및 평가

□ 교육부, 국방부 등 9개 부처가 34개 사업을 신청

- 민투법상 부적격 사업, 지자체 수요가 없는 사업,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제외한 15개 사업에 대해 투자 계획 수립

□ 중앙부처는 사업개발에 적극적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해 부족 등으로 소극적

- 특히, BTL의 장점인 복합시설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2. 추진방향 및 투자목표

- ◇ 일시적 경기대책이 아닌「선진 한국」을 위한 장기 Project로 관리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투자전략 마련
- ◇ BTL을 통해 재정운용방식을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장기 BTL사업 추진 전략

-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Upgrade하기 위해 시설별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여 투자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BTL사업의 3년간('05~'07) 투자목표를 설정하여 참여정부 기간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우선 확충
- 2단계 : '08년 이후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06년에 수립

'05년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 ①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딘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계속사업 위주 선정)
- ② 금년중 착공하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 ③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편익증진,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

주요 투자목표

□ '07년까지 1단계 사업별 투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시설별 최종목표는 적정규모 검토를 거쳐 2단계 투자계획 수립시 반영

〈주요 1단계 투자목표〉

	현재지표 ('04)		1단계목표 ('07)
• 노후 초중등학교 교사 비율 (30년 이상 시설면적/전체 학교면적)	17.2% (151천 교실)	→	14.8% (130천 교실)
• 초중등학교 신축/학급당 학생수	33.3명	→	30.3명
• 초중등학교 체육관 보유율 (체육관 보유 학교수/전체 학교수)	20.5% (2,160개교)	→	25.9% (2,873개교)
• 특수교육 수혜율 (수혜 학생수/특수교육 대상 학생수)	87.1% (86천명)	→	100% (95천명)
•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 (기숙사 수용 학생수/전체 학생수)	11.3% (4.1만명)	→	18% (6.6만명)
• 노후 군 주거시설 비율 (15평이하 · 25년 이상 아파트/전체)	37% (26천세대)	→	9% (6천세대)
• 하수관거 보급률 (시설연장/계획연장)	66% (79천km)	→	75% (101천km)

3. BTL사업 투자계획(안)

- 현재까지 1단계 투자기간('05~'07)중 총 23조원 규모의 BTL사업 발굴
 - '05년중에는 15개 사업 6조원 수준의 BTL사업 협약체결 가능

- 시설 유형별로는 교육시설(58%), 환경시설(24%), 군 주거시설(8%)이 대부분이고, 문화·복지시설은 저조
- 자치단체 사업은 BTL에 대한 이해 부족, 부지확보 문제, 추가 국고지원 기대 등으로 부진
 -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대부분(82%)
 - 보육시설 전무, 노인 복지시설은 매우 저조

(단위: 조원)

구 분		'05년 협약규모	'05~'07년 합계
총 계		6.0	23.4
시설 유형별	1. 교육시설	3.5	13.6
	2. 환경시설	1.0	5.6
	3. 군 주거시설	0.7	1.8
	4. 문화·복지시설	0.4	1.2
	5. 일반철도	0.4	1.2
주무 관청별	1. 중앙부처 · 교육청	4.6	16.6
	2. 지방자치단체	1.4	6.8

〈참고〉 세부 투자계획(안)

(단위: 억원)

사 업 명	'05년		'05~'07 합계	
	물 량	협 약	물 량	협 약
총 계		59,602		234,208
1.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798개교)	491천m ²	5,955	2,754천m ²	33,250
2. 초중등학교 신축	173개교	18,223	755개교	80,496
3.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	274개교	5,685	713개교	14,015
4. 특수학교 신축	5개교	492	15개교	1,741
5. 국립대 기숙사 신축	20개교	4,000	25개교	5,974
6. 군인아파트	6,255세대	6,130	18,000세대	17,700
7. 사병내무반(시범사업)	10개대대	640	10개대대	640
8. 노후 하수관거 정비	1,570km	10,000	8,824km	56,140
9. 기능대학시설 확충(기숙사, 공학관)	6개동	398	11개동	627
10. 문예회관 신축	10개소	2,000	30개소	6,000
11. 도서관 신축	3개소	500	23개소	2,700
12. 박물관·미술관 신축	2개소	1,000	12개소	3,000
13.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	190	9개소	264
14.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32	3개소	32
15. 일반철도(경전선, 전라선)	21km	4,358	56km	11,629

4. 향후 추진일정

◇ 토지확보, 설계완료 등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부터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주무관청의 준비작업 - 3월중
 - 연기금, 보험사, 투자회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 개최 (3월중순)
- 기본계획 고시 및 신청접수 - 4월초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일괄 타당성 조사, 표준협약서 제공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
- 총투자 및 시설별 투자규모 국회 제출 - 4월말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최종 사업자 선정 - 5~6월

○ 사업 착수 - 하반기

- 토지가기 확보되어 있는 사업은 즉시 착공
- 토지확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단계적으로 착공

국세청 업무현황보고 자료

※ 이 자료는 2005년 2월 24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제252회 임시국회 재경위 업무현황보고 자료」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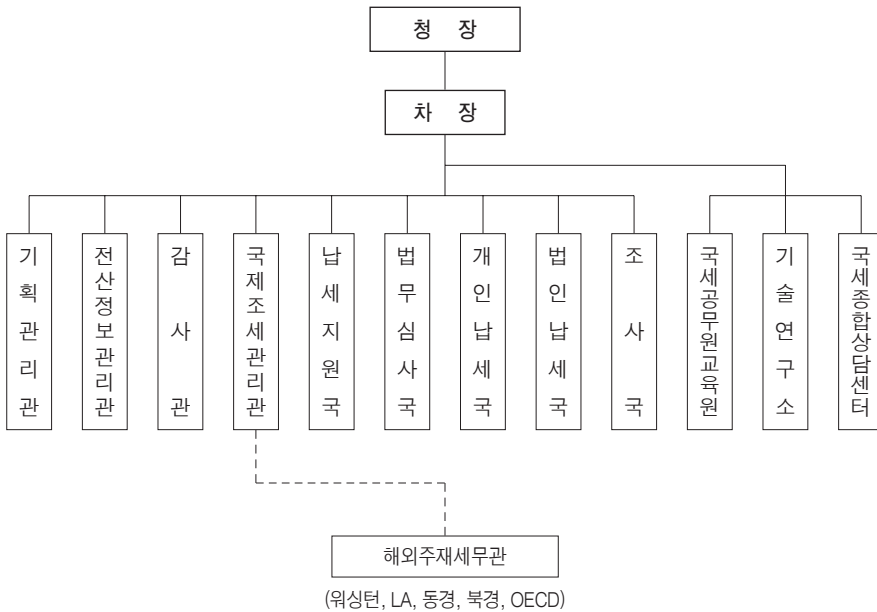
I. 일반현황

1. 기능

○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

2. 조직

□ 본 청: 9국 30과



□ 6개 지방청, 104개 세무서

지방청	기 구	관할구역	세무서 수
서울청	7국 27과	서울	24
충부청	5국 18과	인천·경기·강원	25
대전청	4국 15과	대전·충남·충북	13
광주청	4국 15과	광주·전남·전북	13
대구청	4국 15과	대구·경북	13
부산청	5국 20과	부산·울산·경남·제주	16

3. 정 원

(단위: 명, %)

구 분	계	본 청	지방청	세무서·교육원·연구소·상담센터
인원	17,023	718	2,813	13,492
비율	100	4.2	16.5	79.3
5급 이상	1,185	198	367	620
6급 이하	14,155	442	2,256	11,457
기능직	1,683	78	190	1,415

4. 세입·세출 예산

□ '05년 정부 세입예산 중 국세청 소관이 87.1%를 점유

구 분	'66	'85	'95	'04	2005예산
전 체(억원)	1,538	126,496	592,710	1,292,713	1,399,551
국세청 소관(억원)	700	89,416	517,487	1,102,172	1,218,988
점유비(%)	45.5	70.7	87.3	85.3	87.1

※ 정부세입 = 총국세(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일반회계 세외수입

□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6,698억원으로 67.0% 점유

구 분	2005예산총액	인건비	주요사업비	기본사업비	형사특별회계
금액(억원)	9,997	6,698	2,184	962	153
점유비(%)	100	67.0	21.8	9.6	1.5

<참고> 주요국간 징세비 비교(2002)

미 국	한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02년	'04년			
0.45	0.85	0.86	1.16	1.62	2.11

※ 징세비 비율(%) = 국세청 세출금액 ÷ 국세청 징수금액

II.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 국세행정 혁신인프라의 체계적 구축과 지속적 혁신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및 정부혁신 선도부처로 선정됨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공무원을 찾을 필요가 없는 선진 전자세정시스템 구축
 - 전자신고 비율이 법인세 90%, 부가가치세 55%를 상회하고, 전자민원증명 발급도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자세정 활성화
- 공정·투명한 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증대
 -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만족도 크게 향상(73.6점→78.3점)
- 「깨끗한 국세청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부조리가 대폭 축소되고 자체감사 우수기관(감사원)으로 선정
 - 직원 비위 발생건수 대폭 감소('02년 81건→'03년 47건→'04년 18건)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범죄·부도덕」시 되는 선진 납세풍토 조성
 - 모범성실납세자(154명) 선정, 「세금포인트제」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1,101명 명단 공개('04. 10월)

Ⅲ.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통한 「감동세정」 구현

- ◆ 세정혁신 3년째가 되는 금년에는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율 유도하여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정 구현
- ◆ 전자세정의 완전 정착으로 납세편의, 국세행정 생산성, 부조리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

□ 「감동세정 실천시스템」구축을 통한 납세자 만족도 대폭 제고

- 세무조사·신고·민원처리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업무분야별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 「고객만족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납세자 만족도 파악
- 납세자 만족도 저해요인은 세정혁신에 반영하여 적극 해소
- 개인 및 기관의 평가결과는 국세행정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포상 등에 반영

□ 편리하고 경제적인 「e-세정」의 완전 정착

- 전자신고·민원증명 발급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동 제출되고 있는 일부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예〉 법인세의 경우 금년 3월 정기신고분부터 수동제출 서류(35종)를 전자제출로 전환
- 납세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e-서비스」 추가 제공
 - 「1세대 주택 비과세 자기검증 프로그램」, 「증여세 자기계산시스템」, 「휴대폰을 통한 민원증명신청 서비스」 등

- 납세자의 신고내역·납부이력 등 세무관련 정보를 통합,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 운영

□ 뉴스레터를 국세청과 납세자를 연결하는 채널로 확실하게 정착

- 뉴스레터만 보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제공되는 세무정보의 내용을 대폭 확대
- 170만명에게 발송되는 등 공공기관 중 최다 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금년중에 더 많은 납세자에게 제공 확대
 - * 2003. 9월 서비스 개시, 현재까지 총 70회 발송

□ 개별적인 국세관련 문의·상담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One Stop으로 처리

-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0060), 팩스(02-786-1589),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
 - * 전화상담 응답률: '03년 70% → '04년 92%
- 필요시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대한 문의전화를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전화 연결해 주는 시스템 구축 예정

2.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 국세행정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과세를 사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강화

□ 「국세행정 실명제」를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

- 지난해에 부과·징수관리 부문에 대한 「국세행정 실명제」 시행으로 책임행정 기반을 구축
- 금년에는 체납정리·불복업무 등 국세행정 전 과정의 업무성과를 담당직원 실명으로 전산관리하여 부실과세

축소 등 업무처리의 책임성 제고

□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부실과세 사전 예방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감사 또는 불복심사 과정에서 과다부과 발견시 관리자·담당자에 대하여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 조치
- 주요 패소사건 등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부서에서 패소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전국 관서에 전파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납세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고시의 제·개정시에 행정예고 제도를 도입
- 법령·예규·판례 등을 종합한 「법령해석정보 DB」를 구축하여 국제행정의 과학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

3.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신뢰 지속 제고

- ◆ 그동안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증대
- ◆ 세무조사에 서비스개념 도입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조사업무의 표준화로 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

□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

- 조사의 기본방향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전에 공표
* 2004년에는 6월 10일자로 공표
- 특별세무조사 폐지(2003년) 이후 세무조사가 본연의 성실신고 담보 이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일체 배제
- 불성실신고자가 조사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도록 신고성실도 전산평가요소의 확대 등 전산분석시스템 보완

□ 「지도조사제」 실시 등 세무조사에 납세서비스 개념 도입

- 창업 3년내 중소기업 등이 요청하는 경우 지도·상담차원의 세무조사 실시
 - 향후 사업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세무조사가 경영에도움이 되도록 컨설팅 역할 수행
- 성실신고 검증을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단순 장기 미조사 기업에 대하여도 반복적인 오류를 지도·시정하는 검증차원의 「지도조사제」를 도입
- 조사대상 확정 전 우편질문에 의한 「사전 서면확인제도」도입
 - 서면답변으로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조사를 사전예방
- 탈루혐의가 경미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로 대체
 - 현장조사는 현지확인인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함으로써 조사기간 단축 및 납세자 접촉 축소
- 현재 지방청 단위에서 시행하여 조사재량 통제 등 상당한 성과가 있는 조사상담관 제도를 세무서까지 확대시행 검토

* '04. 10월부터 서울지역 세무서에 시범운영중

□ 조사직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한 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

- 「조사업무 매뉴얼」 마련, 업종별 조사사례 등 관련정보 통합 DB 구축 등으로 조사업무 표준화 추진
- 전산조사 지원기동팀 운영, 알기 쉬운 전산조사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으로 기업회계 전산화에 적극 대처
- 부실부과 과다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조사분야퇴출제도」를 운영하고 공정한 성과보상제도 시행으로 조사수준 향상 유도

4. 세 부담 불균형 시정과 세법질서 확립

- ◆ 신용카드 활성화 등으로도 한계가 있었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 ◆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해외유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 강화

- 소비자가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최대한 확대
 - * '05. 1월말 현재 84만개 가맹, 금년 말까지 100만개 이상 가맹 확대 목표
-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업업소에 대한 특별세무관리 실시
- 현금영수증제도 및 복권제도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 추진
 - '소비자에게는 혜택 및 이용방법'을, '가맹점에게는 지원제도'를 중점 안내하여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종합부동산세제의 차질 없는 집행

-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과세대상자의 주택·토지명세 및 평가액, 재산세 납부액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법정기한 내에 수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철저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적극 유도
 - 부동산 고시가격의 통보 등 치밀한 신고안내와 성실한 납세담담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한 기준시가 고시
 - 아파트 조망 등 개별 특성이 반영된 실재가격 포착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영업자 중점관리

- 과표현실화가 저조한 현금수입업종, 과세자료 노출이

- 어려운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 신고 전 탈루혐의 내용을 사전 제시, 성실신고를 유도
 - 신고 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로 사업실상에 맞는 신고실적 제고

□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해외유출을 강력히 규제

- 변칙증여행위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체계 강화로 완전포괄주의 과세 집행 철저
-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자 등 탈세자금 해외반출 혐의분석·색출을 위해 「외환거래 조기검증시스템」 본격 가동
- 내·외국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심리분석 강화

□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과세

- 신용카드변칙거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자료상), 부정환급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엄정 대처
- 불법 유사취발유,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및 주류거래 정상화 지속 추진
- 악성탈세에는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형사고발

5. 기분 좋게 세금내는 성실납세문화 조성

- ◆ 성실납세에 대해서는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 세무조사·자기신청·타인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정되는 「모범성실납세자」 인원 및 우대방안 확대
 - * 2005. 1. 31 현재 총 264명 선정
-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납세자의 날」에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납세법인에 대하여 「기념탑」수여
- 「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한 납세자 인식 제고 및 인센티

브 강화

* 2000~2003년까지의 납부세액 및 누적포인트를 '05. 3. 3까지
지 통보 예정

□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

- 성실한 세금납부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속적 공개
-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의 적극 홍보로 제도활성화 유도
- 금품제공 납세자 및 금품증개 세무대리인도 금품수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의 탈세 유혹 자체 유도

□ 성실납세자의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 확대

- 모범세무대리인을 적극 선정하여 우대하고「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용활성화 지속 추진
- * 2005. 1. 31현재 총 183명 선정
- 대리인 표기 없는 세무대리인의 면담을 제한하여 불복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화

6. 명예와 창의·청렴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

◆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청렴성 제고가 선결과제임
◆ 이를 위해 인력전문화 노력 강화, 부조리 없는 세무조사의 완전 정착, 투명한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정보화·국제화에 따른 인력의 전문화

- 증점분야별 전문교육의 내실화 추진
 - 최소 2년 주기로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요원 양성교육 강화
 - 외국기관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국내교육과정 내실화로 매년 150명 이상의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양성
- 「전산직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관리체계 구축

- 「직무지식도」를 설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직원이 편리한 시간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확대 운영
- 업무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직무수행을 통한 전문성 향상 유도

□ 부조리 없는 세무조사의 완전 정착으로 깨끗한 국세청·청렴한 국세공무원상 정립

- 조사상담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조사직원의 재량권 축소
 - 조사적출사항 조사상담관 즉시 통보, 과세정점 심의 기능 활성화 등 조사상담관의 부조리 예방기능 확대
 - 납세자의 불편·불만·부조리 관련사항 수시 모니터링
- 사람에 의한 조사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
 - 업종별 조사항목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여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사자와 납세자간의 담합 예방
 - 비대면 서면조사의 확대로 납세자 접촉기회 축소
 - 조사반 편성시 반원 상호간 견제와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사반 인력 Pool제」 시범 운영
- 조사직원 내부 감시시스템 강화
 - 내부 부조리 신고채널(「Clean 신고센터」)을 청장이 직접 관리
 - 내부고발자, 청탁·금품 거절자 및 「Clean 국세인」 선발, 인사상 우대
- 시민 참여를 통한 외부 감시체계 구축
 -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통하여 시민감시기능 활성화
 - 「청렴서약서」작성,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지속 실시로 금품수수 심리 사전 차단
 - 「Clean 세정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부조리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도출

□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

- 「전자인사시스템(PMS)」의 개선·발전
 -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자인사시스템 활용권한을 세무서장까지 위임하여 기관장의 인사자율권 및 책임성 강화
- 직위공모제 활성화로 인사청탁 소지 제거
 - 본·지방청의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공모제를 실시하여 근무기회의 균등한 제공 및 경쟁에 의한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

7. 재정수요의 차질 없는 확보 및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 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면서 경기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세정노력 강화

□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뒷받침

-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경기순행적 노력 강화
 - *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21.9조원('04년 대비 10.6% 증가)
- 성실신고 유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재정수요 뒷받침
- 금융자산 일괄조회 등 지난해 구축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액의 현금징수 실적 제고
 - ※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금융 자산별 조회기준금액을 달리하는 등 차별관리

□ 세무조사 최소화 및 통합조사 실시

-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최소화
 - 법인기업 : '02년 2.0% → '03년 1.5% → '04년 1.3%

• 개인사업자 : '02년 0.19% → '03년 0.17% → '04년 0.15%

- 부가가치세·원천징세 등 관련 세목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상 지원 확대

- 창업중소기업, 최근 3년내 조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유예
- 경영애로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징수유예·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
- 세금문제에 불필요한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간섭을 최대한 축소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진세정 운영

- 세무조사가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정운영
 -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세무조사 선정기준의 사전 발표 등으로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 국제거래에 대한 별도의 이전가격 조사를 일반조사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이 용권장으로 조사부담 완화
- 영문 홍보책자 발행 확대·영문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외국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세금관련 고충 적극 해소
- 불합리한 국제조세관련 규정 등을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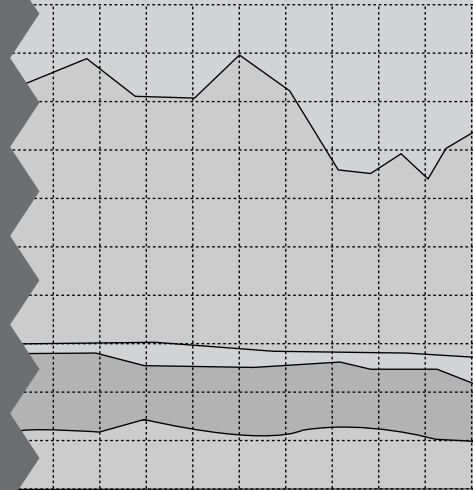
재정통계

• 부가가치세 Ⅲ편

• 특별소비세 Ⅰ편

1.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2.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출고량
3.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부과
4.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 주세 Ⅰ편



1.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A)	(B)		(C)			(B/A)	(C/A)
1977	94,061	101,252	99,300	99,865	8	1,379	107.6	106.2
1978	281,426	329,275	333,102	327,021	136	2,118	117.0	116.2
1979	459,526	504,550	499,227	484,627	92	19,831	109.8	105.5
1980	613,117	610,482	613,090	582,471	117	27,894	99.6	95.0
1981	746,776	671,038	663,580	665,204	59	5,775	89.9	89.1
1982	673,077	670,665	666,441	664,874	1,824	3,967	99.6	98.8
1983	788,376	797,741	795,082	793,315	702	3,724	101.2	100.6
1984	845,278	902,270	900,157	898,110	662	3,498	106.7	106.3
1985	984,934	985,686	986,063	980,807	457	4,422	100.1	99.6
1986	1,041,891	1,092,879	1,094,254	1,085,500	857	6,522	104.9	104.2
1987	1,247,579	1,195,158	1,222,663	1,189,665	1,856	3,637	95.8	95.4
1988	1,308,587	1,335,571	1,336,669	1,333,176	695	1,700	102.1	101.9
1989	1,140,112	1,262,708	1,414,985	1,256,966	1,434	4,308	110.8	110.2
1990	1,449,016	1,915,661	1,782,960	1,911,791	1,347	2,523	132.2	131.9
1991	2,150,646	2,251,338	2,349,161	2,246,526	853	3,959	104.7	104.5
1992	2,852,738	3,073,650	2,949,114	3,068,615	720	4,315	107.7	107.6
1993	3,478,268	3,611,217	3,615,397	3,606,917	978	3,322	103.8	103.7
1994	2,352,600	2,455,924	2,595,194	2,445,573	873	9,478	104.4	104.0
1995	2,610,200	2,631,204	2,662,747	2,617,110	1,654	12,440	100.8	100.3
1996	2,910,200	3,144,321	3,119,253	3,119,253	1,755	23,313	108.0	107.2
1997	3,266,800	3,072,164	3,144,463	3,036,442	4,913	30,809	94.0	92.9
1998	2,011,500	2,272,834	2,197,934	2,211,453	12,262	49,119	113.0	109.9
1999	2,931,012	2,759,381	2,920,468	2,713,271	17,414	28,696	94.1	92.6
2000	1,781,500	3,059,488	2,929,966	2,984,560	22,758	52,170	171.7	167.5
2001	3,038,100	3,709,894	3,394,895	3,633,613	39,369	36,912	122.1	119.6
2002	4,169,200	4,428,859	4,238,531	4,288,222	87,044	53,593	106.2	102.9
2003	5,030,900	4,850,329	4,819,667	4,732,985	65,767	51,577	96.4	94.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출고량

연도	냉장고	세탁기	칼라TV	사탕	청량음료	승용차	등유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계	프로판	부탄		
1983	985,311	359,704	1,442,095	401,283	1,839,039	104,463	-	-	-	-	608,248	5,528,042
1984	1,266,969	560,082	1,625,586	439,692	2,007,955	106,184	-	-	-	-	831,646	6,301,053
1985	1,310,228	567,957	1,145,600	434,814	2,009,551	127,596	-	-	-	-	1,103,043	7,505,400
1986	1,359,871	721,551	1,243,528	480,974	1,987,803	153,160	-	-	-	-	1,337,912	8,081,014
1987	1,650,635	88,723	1,446,489	499,277	2,080,523	232,427	-	-	-	-	1,605,647	7,926,858
1988	1,755,967	1,026,111	1,707,391	584,849	2,015,675	315,971	-	-	-	-	2,097,049	9,711,368
1989	1,837,835	889,831	2,048,078	598,677	2,263,174	470,077	-	-	-	-	2,821,203	11,807,164
1990	1,728,077	595,644	1,798,588	588,877	2,378,581	538,574	-	-	-	-	3,588,319	12,432,707
1991	1,781,002	304,473	2,038,773	670,047	2,346,144	678,134	-	-	-	-	4,408,615	14,568,704
1992	1,790,047	108,413	2,019,094	676,318	2,512,920	737,603	-	-	-	-	5,433,696	17,782,390
1993	1,767,328	54,517	2,221,603	678,931	2,142,295	887,040	-	-	-	-	6,674,588	18,770,340
1994	2,033,682	1,239,599	2,205,138	740,114	2,611,614	1,054,548	-	-	-	-	7,864,626	18,840,025
1995	2,105,092	1,444,906	2,011,289	747,869	2,581,600	980,267	-	-	-	-	9,348,372	21,216,141
1996	1,806,720	1,293,246	2,088,795	759,758	2,412,990	1,050,145	8,070,439	1,464,510	-	-	10,624,153	19,610,957
1997	1,710,602	1,241,908	2,060,677	782,908	2,765,177	991,978	9,861,214	1,949,194	-	-	11,395,842	24,684,101
1998	1,381,464	1,026,319	1,670,932	665,805	3,226,759	381,944	8,224,912	2,327,843	-	-	9,741,609	18,765,537
1999	2,214,636	1,744,273	1,430,225	746,638	2,638,089	521,643	11,824,509	2,676,196	-	-	10,078,106	19,208,585
2000	-	-	-	-	-	716,350	11,033,691	3,030,563	-	-	9,774,679	18,143,971
2001	-	-	-	-	-	724,812	8,926,961	3,322,331	-	-	9,380,601	17,780,283
2002	-	-	-	-	-	954,536	8,656,461	3,450,956	659,350	2,791,606	9,503,587	19,614,888
2003	-	-	-	-	-	874,696	7,709,719	3,717,330	608,430	3,108,900	9,286,273	20,366,911

주: 1. 단위는 냉장고, 세탁기, 칼라TV, 승용차는 '대', 사탕, 석유가스는 '톤', 청량음료는 '千병', 등유, 휘발유, 경유는 'kl' 임.

2. 냉장고, 세탁기, 칼라TV, 사탕, 청량음료는 2000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서 제외.

3. 석유가스는 2001년 7월 1일부터 프로판과 부탄으로 분리하여 과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부과

(단위: 명, 백만원)

연도	납고	세탁기	칼라TV	승용차	사탕	청량음료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기타	수입분
										합계	프로판		
1993	인원	1	7	4	4	17	3	4	-	-	-	9,027	-
	세액	48,639	73,970	59,992	58,472	44,660	183,552	102,456	-	-	-	179,962	27,394
1994	인원	3	8	4	3	20	4	4	-	-	-	9,347	-
	세액	61,857	76,809	73,023	53,818	49,450	207,413	118,991	-	-	-	201,133	31,972
1995	인원	3	8	4	3	22	4	4	-	-	-	9,608	-
	세액	68,260	53,525	88,568	49,339	52,817	271,188	123,449	-	-	-	214,522	34,895
1996	인원	3	8	4	3	22	4	4	-	-	-	10,294	-
	세액	72,214	56,287	105,476	54,579	56,748	304,917	113,496	-	-	-	251,865	37,638
1997	인원	3	8	4	3	22	4	4	-	-	-	7,237	-
	세액	75,340	56,602	149,306	54,040	55,318	351,319	101,350	-	-	-	273,628	59,277
1998	인원	4	8	4	3	22	4	4	-	-	-	7,384	-
	세액	70,221	63,039	209,187	47,529	51,645	360,391	105,413	-	-	-	323,948	52,774
1999	인원	3	9	4	3	22	4	4	-	-	-	3,883	-
	세액	60,511	30,249	312,672	24,068	39,762	372,270	118,531	-	-	-	341,443	63,540
1990	인원	8	4	5	3	25	5	6	-	-	-	4,616	-
	세액	68,029	25,483	418,853	27,357	44,131	457,373	124,828	-	-	-	426,169	129,098
1991	인원	7	6	6	3	26	5	△5	-	-	-	4,375	-
	세액	94,050	13,802	83,489	504,297	48,749	779,895	155,680	-	-	-	527,897	113,109
1992	인원	8	5	6	3	25	5	△5	-	-	-	4,305	-
	세액	113,006	4,882	102,663	547,211	50,875	1,260,534	200,767	-	-	-	527,775	112,032
1993	인원	9	5	6	3	26	5	△5	-	-	-	3,854	-
	세액	131,543	2,647	123,888	654,234	48,405	1,727,840	237,451	-	-	-	533,777	125,487
1994	인원	8	6	6	3	29	5	△5	-	-	-	3,901	-
	세액	161,475	50,841	937,251	33,029	60,946	200,636	28,423	-	-	-	725,104	257,935
1995	인원	6	5	6	4	31	-	-	-	-	-	3,599	-
	세액	126,486	82,702	116,549	1,019,133	63,813	-	-	-	-	-	860,873	356,893
1996	인원	6	3	6	3	28	-	-	5	7	-	-	-
	세액	104,711	88,665	121,026	1,198,246	72,060	-	-	102,917	28,625	-	-	-
1997	인원	7	5	7	6	27	-	-	5	7	-	-	-
	세액	116,444	83,591	95,035	1,220,319	73,633	-	-	230,972	34,885	-	-	-
1998	인원	9	6	7	5	27	-	-	5	8	-	-	-
	세액	62,398	34,407	44,545	260,563	74,931	-	-	382,465	87,714	-	-	-
1999	인원	11	4	7	11	22	-	-	5	10(△5)	-	-	-
	세액	78,618	40,057	381,274	47,907	88,088	-	-	683,429	107,021	-	-	-
2000	인원	-	-	5	-	-	-	-	5	7(△5)	-	-	-
	세액	-	-	664,809	-	-	-	-	597,506	121,113	-	-	-
2001	인원	-	-	5	-	-	-	-	5	5(△9)	-	-	-
	세액	-	-	792,430	-	-	-	-	580,379	206,294	-	-	-
2002	인원	-	-	5	-	-	-	-	5	5	5(△7)	5(△21)	-
	세액	-	-	1,003,635	-	-	-	-	741,918	404,127	29,931	374,196	-
2003	인원	-	-	5	-	-	-	-	5	5(△9)	5(△9)	5(△18)	-
	세액	-	-	1,074,477	-	-	-	-	797,835	674,953	23,837	651,116	-

주: 1. 휘발유, 경유는 1994. 1. 1 반출분부터 교통세로 전환.

2. 인원분의 스포시는 타업종 겸업자를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단위: 백만원)

연도	합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1977	99,195	2,362	28,724	22,529	44,463	-	1,116	-
1978	324,177	8,939	117,985	69,243	125,228	-	2,782	-
1979	485,754	10,398	168,795	85,090	218,312	-	3,160	-
1980	606,250	9,780	112,833	109,613	370,765	-	3,260	-
1981	652,376	11,434	144,950	131,018	361,423	-	3,550	-
1982	653,274	12,224	167,784	149,885	306,362	-	4,464	12,554
1983	767,688	14,761	245,587	171,285	315,695	-	4,748	15,612
1984	868,431	16,905	280,367	186,919	362,408	-	5,191	16,641
1985	951,167	18,067	280,265	196,653	433,713	-	5,911	16,558
1986	1,056,617	20,155	329,260	223,350	457,889	-	7,065	18,898
1987	1,163,388	20,692	412,128	210,477	492,855	-	8,663	18,573
1988	1,284,001	23,000	544,943	187,489	498,466	-	11,049	19,054
1989	1,351,445	19,998	667,656	116,714	508,008	-	16,988	22,081
1990	1,653,862	23,162	854,098	134,579	600,846	-	17,694	23,483
1991	2,236,052	24,251	1,055,121	152,504	957,438	-	18,849	27,889
1992	2,837,082	26,891	1,100,932	166,031	1,489,619	-	22,360	31,249
1993	3,489,931	33,593	1,242,852	167,227	1,993,987	-	21,866	30,406
1994	2,337,259	46,371	1,684,041	200,420	335,208	-	24,799	46,420
1995	2,305,855	271,856	593,987	198,513	4,275	1,149,714	29,145	58,365
1996	2,467,705	284,155	565,702	192,721	4,733	1,328,255	31,686	60,453
1997	2,683,306	310,123	553,046	202,290	5,702	1,486,177	43,709	82,259
1998	1,619,862	198,709	302,309	197,969	5,242	730,742	97,287	87,602
1999	2,164,432	213,687	338,684	212,026	7,813	1,171,724	119,966	100,532
2000	2,045,967	405,389	-26,420	1,110	10,562	1,383,428	121,892	150,006
2001	2,438,270	491,490	-	4,047	4,072	1,600,929	127,707	210,025
2002	2,960,325	408,487	-	2,520	3,230	2,230,734	132,393	182,961
2003	3,358,126	370,954	-	2,250	3,132	2,675,405	142,998	163,38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

1주택 양도세 실질적 면제 유지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 하면서 "언제 폐지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상반기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양도세 비과세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과세형평과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서다.

사실 과세형평이나 조세업무의 효율만 따지자면 기존의 양도세 비과세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반면에 소형주택을 2채 가진 경우는 언제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소유 양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1가구 1주택 소유

자는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그대로 놔둔다면 오는 2006년부터 도입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과세 제도의 폐지 목적이 정부 비대화에 따른 새로운 세원(稅源)의 확보까지 겸하고 있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애초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보호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게다가 최근들어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들이 무차별 인상중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주로 세원 확보와 세수 증대를 겨냥하고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온 양도세 비과세 제도에까지 손을 뻗었다면 대국민 설득력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를 선선히 받아들일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비과세 제도가 정부의 부동산정

책 일반을 어렵게 만든다면 1가구 1주택에도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여하면 된다. 대신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비과세 효과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 형태의 세제 변경 역시 중·장기적인 검토과제여야 함은 물론이다.

2005년 3월 4일자 문화일보 사설

공시지가 충격, 거래세 내려 흡수해야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작년에 19.56% 오른 데 이어 올해 또 26.25%나 오르게 됐다. 이로써 공시지가는 시가(時價)의 91% 수준까지 접근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현실화 목표를 90%를 달성하게 됐다. 이른바 '시가'라는 것이 아무리 정확을 기해 산정한다 하더라도 다분히 거품이 낀 가격임을 감안하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3년간의 고율 인상

끝에 목표를 달성한 것은 좋으나 그로 말미암은 조세저항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다. 집 한채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이 내는 양도세·등록세·취득세의 폭등이 가져올 서민들의 불만 누적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과표가 시기에 접근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등할 때마다 우리는 거래세나 보유세의 세율을 내려 납세자의 형편과 조율을 이룰 것을 주장해 왔다. 부동산세와 관련된 세금공세 강화는 세금 증수보다 투기억제가 1차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형편과 조율을 이루는 방안이 시급한 것은 투기억제의 1차적 수단인 보유세 강화가 급진적되고 있는데도 이번처럼 거래세마저 따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의의 토지·주택 보유자들에게 거래세·재산세 양면에서 세금 공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자체 등의 재산세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다행히 정부는 작년에 5.8%이던 취득·등록세율을 올해부터는 4%로 낮췄다. 그러나 토지 부분은 1%포인트 인하에 그쳐 세부담 경감은 그 의미가 퇴색했다. 더구나 올 하반기에는 작년 인상분과 금년 인상분이 함께 과세될 예정이

라 서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아주 무겁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도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한 조율 시책을 내놔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전산화 조회를 통한 투명화 작업이 곧 완성될 시점에 와 있는 만큼 이젠 부동산 탈세가 불가능하게 됐다. 과표 폭등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는 조치가 시급하다.

2005년 2월 28일자 문화일보 사설

너무 빈약한 사회보호 재정

복지 문제는 참으로 미묘하다.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과 깊은 관련이 있고, 돈을 내는 측(납세자)과 혜택을 받는 측이 다르다는 복지 서비스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소득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재정의 복지 지출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보아온 대로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지 재정은 과연 적정하냐?

한국조세연구원이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재정지출 국제비교는 의미있는 통계수치를 제공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정지출을 분야별로 비교해 보니 우리의 복지재정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2002년 기준 전체 재정

지출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의 비중(2.4%)은 OECD 평균(17.6%)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업·농어촌 지원 등 '경제업무'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5배나 많았다. 소득재분배와 직결되는 국가재정의 운용이 '성장'에 편중돼 복지를 소홀했다는 단적인 증거다.

사실 우리의 복지재정 지출은 소득수준이 비슷했던 시기로 환산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2000~2003년 평균 사회보장 지출은 GDP의 3.7%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미국도 1970년대 GDP 대비 연평균 8.6%를 사회보장에 썼고, 2000~2003년 평균은 11.5%로 늘었다.

정부가 2008년까지 복지 지출을 전체 재정지출의 증가율보다 더 크게 늘리기로 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재정은 더 확대돼야 한다. 복지투자도 확대해 복지서비스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경제업무에 대한 비중은 떨어뜨리되 성장동력이 감퇴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2005년 2월 26일자 경향신문 사설

소비확대 막는 준조세성 지출

각종 연기금과 사회보험료, 지급 이자 등 개인이 부담하는 준조세성 지출이 크게 늘어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느는 것 이상으로 조세와 준조세성 지출이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5.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조세와 준조세성 지출은 각각 11.7%와 13.5% 늘어 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이들 비소비 지출 증가로 그만큼 민간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말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규모도 조세부담의 3배에 달하는 준조세성 지출이 증가율에서도 조세를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부담이 소비위축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준조세성 지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퇴직기여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고용보험 등 사회 부담금은 개인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장래 경제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면 개인 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금 고갈을 걱정하며 연금보험료 납부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불신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연금과 별도로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연금재정 건전화에 대해 불가피하며 연금고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국회에서 3년째 표류중인 연금제도 개혁을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면 자신이 불입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연기금에서 대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금이 되찾기 어려운 준조세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외로 나가는 교육비 송금으로 인한 비소비 지출을 줄여 국내소비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교육시장 개방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예금금리를 내리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한 은행의 행태를 개선하는 것도 가계의 지급이자를 줄여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2월 26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

연기금 주식의결권 부여 조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 기준 발표를 계기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단측은 경영권 분쟁과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과 관련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반면 재계는 연금의 발언권이 강화될 경우 기업 경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맞서고있다.

특히 재계는 연금을 운용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정부임을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때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투자자가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공단의 연금 운용에 정부 입김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측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 어느 한편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편 주장이 절대적으로 그르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나 몇 가지 순기능을 고려했을 때 연금의 의결권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연금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할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금이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 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 자체가 기업의 건실한 발

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의 의결권 확대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 때 백기사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의결권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무엇보다 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발언권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기금운용위원회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결권만 확대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체제로 전면 재편하는 한편 위원회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연금의 지분율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에 대비해 의결권을 일정 지분율까지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정부를 비롯해 연금의 의결권 확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전경련, 경총 등 재계가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고 주주들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2005년 2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